

관세연구 17-06

# 주요국의 반덤핑소송절차와 비밀정보취급규정에 대한 연구

2017. 12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신 상 화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김 다 량 관 세 사

양 지 영 연구원

# 목차

|  |    |
|--|----|
| I. 서론 .....                              | 7  |
| II. WTO의 반덤핑소송절차 및 비밀정보취급규정 .....        | 9  |
| 1. 개요 .....                              | 9  |
| 2. 분쟁해결(소송)절차 .....                      | 9  |
| 3. 비밀정보취급규정 및 사례 .....                   | 15 |
| 가. 규정 .....                              | 15 |
| 나. 관련 사례 .....                           | 17 |
| III.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반덤핑소송절차 및 비밀정보취급규정 ..... | 20 |
| 1. 우리나라 .....                            | 20 |
| 가. 개요 .....                              | 20 |
| 나. 반덤핑소송절차 .....                         | 21 |
| 다. 비밀정보취급규정 및 사례 .....                   | 32 |
| 2. 미국 .....                              | 36 |
| 가. 개요 .....                              | 36 |
| 나. 반덤핑 소송절차 .....                        | 38 |
| 다. 비밀정보취급규정 및 사례 .....                   | 44 |
| 3. EU .....                              | 52 |

|                            |    |
|----------------------------|----|
| 가. 개요 .....                | 52 |
| 나. 반덤핑 소송절차 .....          | 54 |
| 다. 비밀정보취급규정 및 사례 .....     | 60 |
|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 67 |
| 1. 국제비교 .....              | 67 |
| 가. 반덤핑소송절차 .....           | 67 |
| 나. 비밀정보 보호체계와 대리인 .....    | 68 |
| 다. 공개용 요약본 .....           | 69 |
| 라. 비밀정보요청권과 정보공개청구권 .....  | 69 |
| 마. 비밀정보 취급규정 관련 사례 .....   | 70 |
| 2. 시사점 .....               | 73 |
| 가. 정보공개청구권 규정 .....        | 73 |
| 나. 공개용 요약본 상세규정 .....      | 74 |
| 다. 영업비밀 보호체계와 대리인 제도 ..... | 75 |
| V. 결론 .....                | 79 |
| 참고문헌 .....                 | 81 |
| 부 록 .....                  | 86 |
| 가. 일본 .....                | 86 |
| 나. 중국 .....                | 89 |

## 표 목차

|   |    |
|---|----|
| 〈표 II-1〉 WTO의 Guatemala -Cement II 사건 ..... | 19 |
| 〈표 III-1〉 미국의 공개용 요약본 예 .....               | 47 |
| 〈표 IV-1〉 반덤핑소송절차와 비밀유지취급규정 국제비교 .....       | 71 |

## 그림 목차

|                                    |    |
|------------------------------------|----|
| [그림 II-1] WTO 분쟁해결절차 .....         | 12 |
| [그림 II-2] WTO의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 | 16 |
| [그림 III-1]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심판 절차 .....   | 23 |
| [그림 III-2] 우리나라의 행정소송 심급체계 .....   | 26 |
| [그림 III-3] 우리나라의 제1심 행정소송 절차 ..... | 27 |
| [그림 III-4]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의 종류 .....    | 29 |
| [그림 III-5] 미국 사법심판 절차 .....        | 38 |
| [그림 III-6] EU 사법재판소의 구조 .....      | 55 |

## I. 서론

- 2007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반덤핑 조치건수가 지속적으로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7년 전 세계 반덤핑 조치는 165건이었으나 2009년 21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338건,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145건임<sup>1)</sup>
  
- 국제적으로 반덤핑 소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소송 절차와 관련 법령의 복잡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덤핑 조치 이후 각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본 보고서에서는 ‘반덤핑소송’이라고 축약함
  
- 특히 반덤핑조치를 위한 조사에는 기업이 공개하기를 꺼리는 사업과 경영상의 영업비밀 정보를 참고하는데 이러한 비밀정보를 반덤핑소송을 위해 제출해야 하거나 소송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 비밀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반덤핑소송 중 영업비밀이 소송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커다란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관세법」의 모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WTO 반덤핑 협정」에는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중 비밀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1) 외교부,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2017.12

- 반덤핑소송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은 반덤핑피해의 조사와 반덤핑관세 부과 방법 등 반덤핑 조치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반덤핑 소송과 관련한 비밀정보취급규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반덤핑 조치 절차와 관련하여 최석범(2010), 오문갑(2014), 김용길(2016) 및 조일림외1인(2017) 등은 중국과 한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법적체계 및 현황을 연구하였고<sup>2)</sup>, 이환규(2012, 2014), 한나희 외1인(2011) 등은 미국의 무역구제제도와 반덤핑조치 대상 선정기준 등을 연구하였으나 반덤핑 소송절차와 관련한 비밀정보 취급규정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었음
  
- 본 연구는 WTO 협정, 미국 및 EU의 반덤핑소송절차와 비밀유지취급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제도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는 서론인 제I장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II장에서는 WTO 반덤핑협정 우리나라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반덤핑 조사 중의 비밀정보취급규정 및 정보공개청구권,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조사함
  - 제III장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EU의 행정심판, 반덤핑 소송, 반덤핑 조사 중의 비밀정보취급규정 및 정보공개청구권,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조사함
    - 우리나라에는 없는 비밀정보 취급규정과 관련된 사례로 미국의 APO 제도를 정리함
  -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을 비교한 뒤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제V장에서는 보고서의 결론을 요약함

---

2) 조일림·김희철,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에 대한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4호, 2017, 12, p. 66.

## II. WTO의 반덤핑소송절차 및 비밀정보취급규정

- 이 장에서는 WTO 회원국의 국내 반덤핑법령의 모태가 되는 「WTO 반덤핑협정」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절차, 반덤핑규정상 비밀정보취급규정 및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함

### 1. 개요

- 반덤핑제도는 「GATT 1994」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sup>3)</sup>에 규정되어 있으며, 반덤핑조치에 대한 WTO협정국의 분쟁해결(소송)절차는 「WTO 분쟁해결양해(DSU)」<sup>4)</sup>에서 규정함
- 반덤핑 조사 특성상 기업의 비밀정보가 조사 중에 공개되어 기업의 이익에 침해되므로 「반덤핑 협정」에는 비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음
  - 「반덤핑 협정」의 비밀정보취급에 대한 규정은 제6.5조, 제6.5.1조, 제6.5.2조에 명시하고 있음

### 2. 분쟁해결(소송)절차<sup>5)</sup>

- WTO의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는 WTO 협정에 부속된

---

3)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4) 정식명칭은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임

5) WTO,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8-dsu\\_e.htm#fnt-16](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8-dsu_e.htm#fnt-16), 검색일자: 2018.2.14

모든 협정에 대한 통합적인 분쟁해결 재판소 역할을 함

- 분쟁해결기구의 목적은 WTO 회원국의 협정과 일치하지 않은 무역 관련 조치의 철회를 보장하는 것임

□ WTO 회원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소송은 WTO 협정 중 하나인 「분쟁해결양해(DSU)」<sup>6)</sup>에서 규정하고 있음

□ WTO 분쟁해결절차는 크게 ① 양자협의 ② 패널절차 ③ 항소절차 ④ 피소국의 합리적 이행기간 ⑤ DSB의 이행심사 그리고 ⑥ 보상 또는 보복조치 등 6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양자협의를 WTO의 패널설치 이전에 거쳐야 하는 전심 단계로, 분쟁 당사국 간 외교적으로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sup>7)</sup>
  -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 수령 후 10일 이내 회신하고 30일 이내 협의를 시작하여야 함
  - 양자협의를 위한 기간은 총 60일이 주어짐
- 양자협상에 실패하면 본격적인 재판절차(adjudication)인 패널 설치가 요구됨<sup>8)</sup>
  - 패널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 당사국간 합의로 패널이 구성됨<sup>9)</sup>
  - 패널의 심리기간은 패널 설치 후 6개월이나 최대 9개월로 연장 가능함

6) DSU는 과거 GATT가 규율하던 전통적인 상품교역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그리고 DSU 자체에 관한 분쟁까지도 규율함으로써 관할권이 기존보다 확대되었음. 또한 과거의 약 200개에 달하던 GATT 협정과 30여개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DSU라는 단 하나의 법적 틀로 통합되었다는 점이 큰 의미를 지님. 자료: 장동식, 「WTO 분쟁해결제도(DSU) 개혁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79호, 2008.2, p. 29

7) DSU 제4조

8) DSU 제6조~제12조

9) 패널설치기간(20일) 내 패널구성이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은 사무총장 직권으로 패널구성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제소국이 직권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며, 실제 패널 구성 기간은 평균 약 76일이 소요됨. 자료: 정기창, 「WTO 분쟁 패소국의 불이행요인과 이행촉진방안 분석」, 『통상법률』 제112권,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3.8, p. 57

- 패널 심리에 따른 보고서 제출 후 2주 내 분쟁 당사국 간 합의 실패 시 패널 보고서를 회람함
- 패널 보고서(결정)에 불복하는 회원국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sup>10)</sup>
  - 항소 심리기간은 항소의사를 제기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장 90일까지 연장 가능함
  - 항소 심리는 법적 쟁점에 국한되므로, 패널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분석되지 않으면 이를 파기환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항소 보고서(결정)에 대해 회원국은 보고서 배포 후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합의)해야 하며, 채택 시 분쟁 당사자는 무조건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수락해야 함
- 항소 보고서(결정)가 채택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 패소국은 DSB에 권고내용을 이행할 의사를 통보해야 함<sup>11)</sup>
  - 패소국이 권고내용을 즉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DSB로부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5개월 정도의 합리적 이행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을 부여받음
- 패소국은 이행상황을 DSB에 보고해야 하며, DSB는 이행패널을 설치하여 판정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심시해야 함
  - 이행심사는 합리적 이행기간(RPT)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 DSB 정례회의 의제로 올려져 다자적으로 감독받음<sup>12)</sup>
  - 이행심사는 패널 절차를 담당했던 패널 위원이 진행하며, 이행패널절차에 불복할 경우 추가적인 항소가 가능함<sup>13)</sup>
- 이행심사 결과 패소국의 이행조치가 여전히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되면 WTO는 이를 중재에 회부하고 제소국에게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을 허용함<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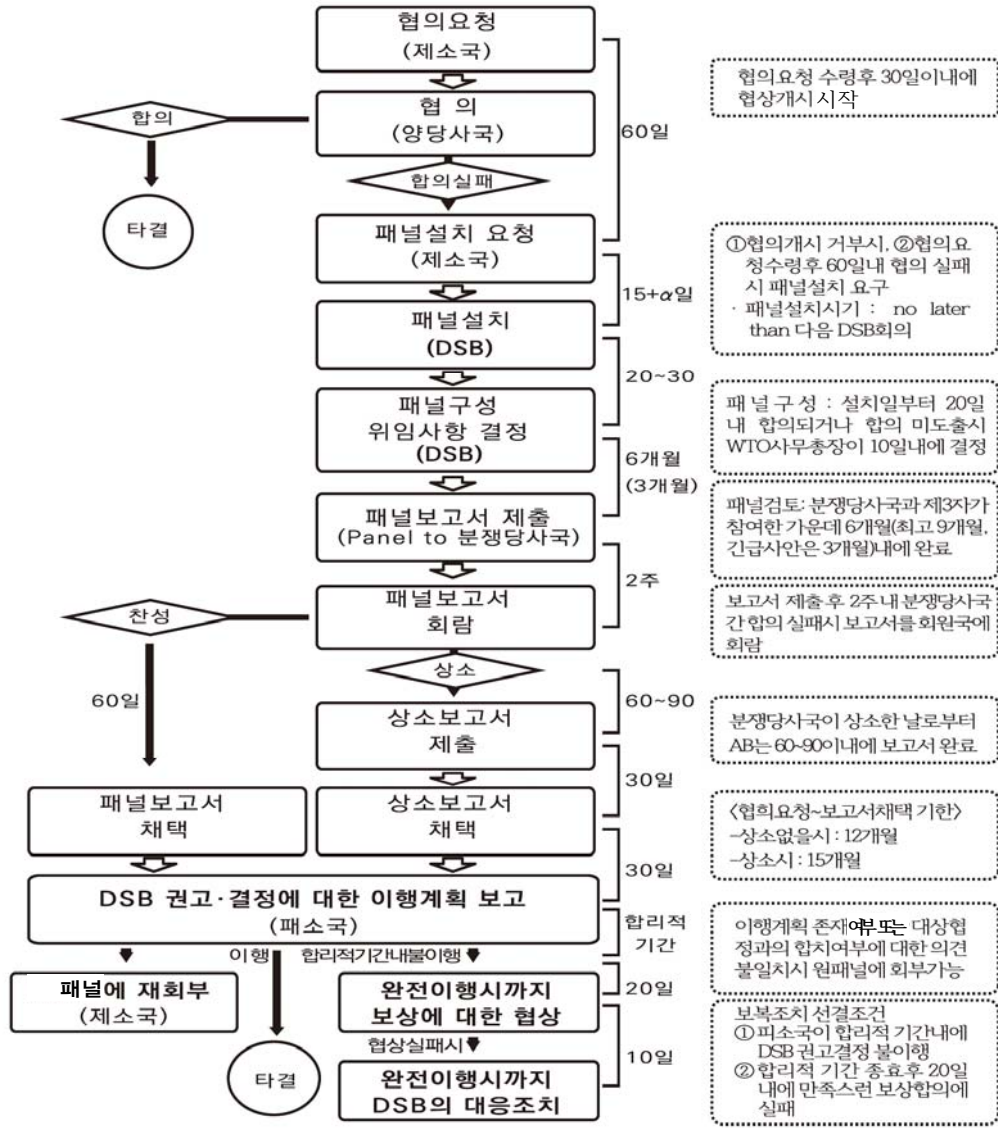
10) DSU 제17조

11) DSU 제21조

12) 정기창(2013.8), p. 60

13) 정기창(2013.8), p. 61

[그림 II-1] WTO 분쟁해결절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 관련 WTO 양자협의 요청」, 2015.5.21

14) DSU 제22조. 패소국의 보상 제공 또는 제소국의 보복조치는 패소국의 무역 조치가 즉각적으로 철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이뤄져야 함. 자료: DSU 제3.7조

- 제소국은 패소국에게 보복조치 요청 전 보상을 협상할 수 있음
  - 합리적 이행기간(RTP)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분쟁 당사국 간 보상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제소국은 패소국으로 인해 발생한 무효화(nullification) 또는 침해(impairment)에 상응하는 수준만큼 보복조치의 승인을 DSB에 요청할 수 있음
- WTO 회원국으로서 WTO 협정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혜택이 다른 WTO 회원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저해되는 경우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sup>15)</sup>
- 패널 또는 항소기구에 제출된 서면 정보는 기밀로 취급되어야 하지만, 분쟁 당사자에게는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됨<sup>16)</sup>
- 분쟁 당사국은 타방이 패널 또는 항소기구에 기밀로 지명하여 제출한 정보를 기밀정보로 취급해야 함
  - 분쟁 당사국은 WTO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기밀이 아닌 중재보고서의 요약본을 제공해야 함
- 패널 심리에서 각 패널은 분쟁당사국 관할권 내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정보 등을 얻을 수 있고 전문가와 협의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음<sup>17)</sup>
- 패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권리가 있음
    - 패널은 회원의 관할권 내의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나 조언을 구하기 전에 해당 회원국에 통보해야 함
    - 회원국은 패널이 적절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완벽히 제공해야 함

---

15) DSU 제3.3조

16) DSU 제18조

17) DSU 제13조

- 제공되는 기밀 정보는 정보를 제공하는 회원국의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의 공식적인 허가가 없다면 공개될 수 없음
  - 패널은 사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전문가와 협의하여 문제의 특정 측면에 대한 의견을 얻을 수 있음
    - 분쟁 당사국이 제기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문제와 관련하여 패널은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검토)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음
-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양자협의를, 패널, 그리고 항소의 모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함
- 양자협의를 기밀로 진행하며 이후 절차에서 분쟁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sup>18)</sup>
  - 패널과 항소기구의 심리는 기밀로 함<sup>19)</sup>
    - 패널 보고서는 분쟁 당사자의 출석 없이 작성되어야 함
    - 패널 및 항소심리에서 각 위원은 패널 및 항소 보고서에 표명한 의견에 대해 익명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음
- WTO 분쟁해결절차는 중 제소국의 보복조치 승인요청과 관련하여 해당 문제는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인은 제소국이 제안한 피해금액이 WTO 협정에 허용되는 수준인지 검토하게 됨<sup>20)</sup>
-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분쟁당사자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중재를 요구할 수 없음

---

18) DSU 제4.6조

19) DSU 제14조, 제17.10조

20) DSU 제22.6조

### 3. 비밀정보취급규정 및 사례

#### 가. 규정

- 「반덤핑 협정」 제6.5조에는 비밀정보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sup>21)</sup>
  - 본질적 비밀 정보(nature confidential)는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
  - 비밀로 제공된 정보(confidential basis)는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이유(good cause)’를 제시하며 요청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됨
    - 정보를 제출하는 제공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공개될 수 없음
    - 회원국은 특정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한정적인 보호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 제6.5.1조에는 비밀정보 제공자의 공개 요약본 제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6.5.1조에는 비밀정보 제공자의 공개 요약본 제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sup>22)</sup>
  - 관련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게 정보의 공개 요약본을 요청해야 함
  - 공개 요약본에는 비밀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함
  - 예외적으로 비밀정보의 공개 요약본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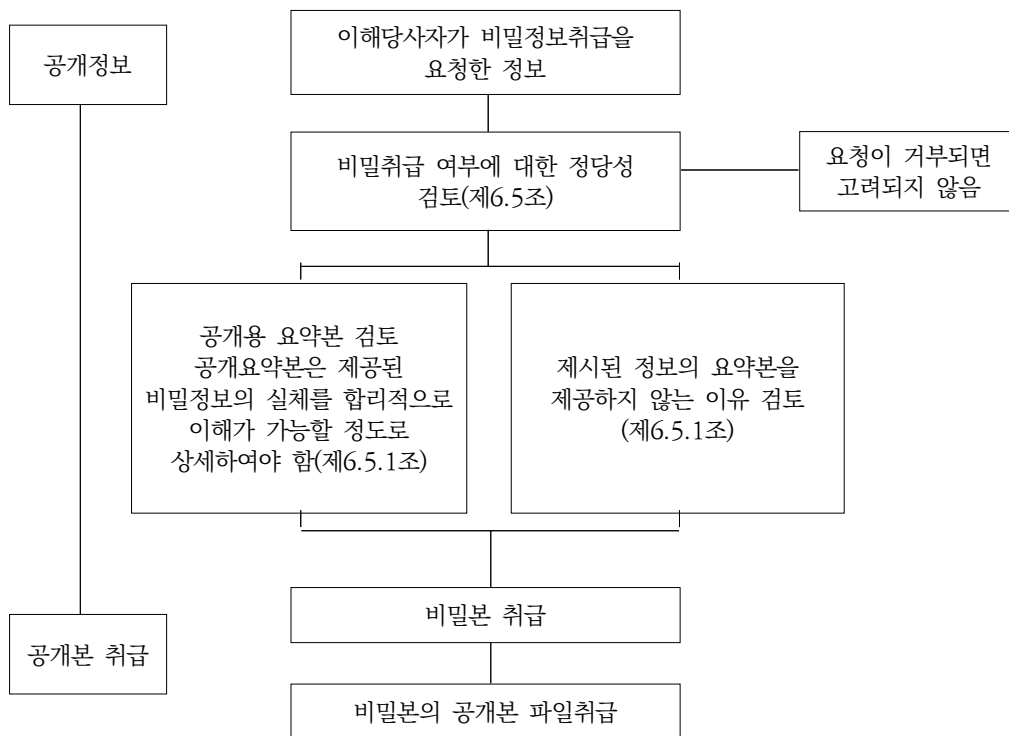
---

21) 반덤핑협정 제6.5조

22) 반덤핑협정 제6.5.1조

- 제6.5.2조는 비밀정보 제공자의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공자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요약된 형태로 제출해야 함<sup>23)</sup>
  - 조사당국은 제공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적절한 출처를 통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증거로서 채택하지 않음<sup>24)</sup>
  
- 제6.9조에는 증거의 공개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당국은 최종판정 이전에 확정조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함

[그림 II-2] WTO의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자료: 주디스 차코, 요한 휴먼, 조르주 미란다, 「WTO 반덤핑 가이드북」, 2013.11

23) 반덤핑협정 제6.5.2조

24) 회원국은 비밀보호의 요청을 자의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됨

- 공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
- 제6.9조에 있어 실질적으로 '충분한 시간'과 '필수 요소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 나. 관련 사례

- 1995년 9월 과테말라의 시멘트 생산 기업 'Cementos Progreso'는 멕시코 기업 'Cruz Azul'의 시멘트 반덤핑 조사를 과테말라에 요청함<sup>25)</sup>
  - 과테말라 정부는 Cementos Progreso의 요청을 바탕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함
  - 1996년 8월 과테말라 정부는 멕시코의 시멘트에 반덤핑관세 38.72%를 부과함
  
- 1999년 2월 23일 양자협의를 시간을 가졌으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리지 못하였음
  
- 이에 1999년 7월 26일 멕시코는 과테말라가 WTO 협정의 비밀조항 제6.5, 제6.5.1 및 제6.5.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WTO 패널을 신청함
  - 제6.5조는 본질적 비밀 정보(nature confidential)와 비밀로 제공된 정보(confidential basis) 두 가지로 구별되고 비밀정보로 요청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good cause)가 있어야 함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sup>26)</sup>
  - 멕시코는 제6.5.2조에 관해 과테말라 행정당국이 Cementos Progreso 기업의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정보로 취급하여 자료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함
  
- 멕시코 주장에 맞서 과테말라는 Cementos Progreso에서 제공한 정보를 다룰 때 WTO 협정 제6.5.1조 및 제6.5.2조를 준수했다고 주장함<sup>27)</sup>

25)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156\\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156_e.htm), 검색일자 2018.2.10

26) 반덤핑협정 제6.5조

- 제6.5.1조는 비밀정보의 공개 요약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함
  - 제6.5.2조는 비밀이 아니라고 판정될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제공자가 공개를 거부할 때 정보의 정확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시할 수 있는 조항임
- 과테말라 행정당국이 비밀로 분류한 정보는 Cementos Progreso와 F.L.Smith & Co. 기업이 회색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내용임<sup>28)</sup>
- 과테말라는 Cementos Progreso에서 제출된 서류는 분명히 비밀이며 제6.5.1조에 따라 요약할 수 없었다고 주장함
    - 과테말라에서는 검증 방문 중에 입수한 비밀 문서의 공개 버전을 요구하지 않도록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함
- 이에 패널은 다음의 과정을 거침<sup>29)</sup>
- Cementos Progreso 정보가 분명한 본질적 비밀(nature confidential)이라고 과테말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제6.5조의 해석에 의하면 본질적 비밀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함
  - Cementos Progreso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테말라 정부에 비밀요청을 했다고 볼 수 없음
  - 과테말라 정부는 Cementos Progreso가 제출한 비밀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입증하지 못했음
  - 패널의 관점에서 제6.5조의 정당한 이유는 비밀 정보를 제출하는 이해 관계자에 의해 요청되어야 하며, 조사 당국이 자발적으로 비밀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사기관이 비밀정보로 취급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림

27)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156\\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156_e.htm), 검색일자 2018.2.10

28)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156\\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156_e.htm), 검색일자 2018.2.10

29)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6.aspx?DataSource=Cat&query=@Symbol=WT/DS156/R&Language=English&Context=ScriptedSearches&languageUIChanged=true](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6.aspx?DataSource=Cat&query=@Symbol=WT/DS156/R&Language=English&Context=ScriptedSearches&languageUIChanged=true), 검색일자 2018.2.11

- 멕시코는 제6.5.1조와 제6.5.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당국이 자발적으로 비밀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제 6.5조이므로, 제6.5.1조와 제6.5.2조의 주장은 기각함
- 결론은 제6.5조에 따라 과테말라 기업 Cementos Progreso가 비밀정보 요청을 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패널은 Cementos Progreso 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과테말라 당국이 이를 비밀 정보로 취급한 것은 제6.5조를 위반이라고 평결하였음<sup>30)</sup>

〈표 II-1〉 WTO의 Guatemala -Cement II 사건

| 사건               | Guatemala -Cement II   |
|------------------|--|
| 제소국(Complainant) | 멕시코  |
| 피소국(Respondent)  | 과테말라   |
| 분쟁절차 신청          | 1999.1.5   |
| 패널리포트            | 2000.10.24   |
| 관련조항             | 반덤핑 협정 제6.5조   |
| 판정               | 제6.5조의 당국의 조사기관이 비밀취급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없으며 비밀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면 비밀로 취급이 되지 않아야 함 |

자료: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156\\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156_e.htm), 검색일자: 2018.2.11

30)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156\\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156_e.htm), 검색일자 2018.2.10

### Ⅲ.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반덤핑소송절차와 비밀정보취급규정

-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반덤핑소송절차와 비밀정보취급규정에 관해 상세히 살펴봄
  - 우리나라의 제도를 먼저 살펴본 뒤 전문가 대리인 제도(APO)라는 특별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대리하여 반덤핑조치를 처리하는 EU의 사례를 분석함

#### 1. 우리나라

##### 가. 개요

-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판정하여 기획재정부에 반덤핑조치를 건의함
  - 반덤핑 조치는 ① 신청인의 신청 ② 요건 심사 ③ 조사개시 ④ 예비조사 ⑤ 본조사 ⑥ 덤핑 여부 판정의 과정을 거침
  -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에 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하고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는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의 반덤핑관세처분에 불복을 제기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외국물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후 국내 행정소송절차에 대한 흐름을 행정심판 판결문<sup>31)</sup>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함
  - 외국물품 수입신고 → 세관의 과세 전 통지(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 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 제기 → 세관장의 경정고지(처분) → 납세자 행정심판 제기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한 납세자의 행정소송 제기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반덤핑 소송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뒤 반덤핑조치에 사용된 비밀정보에 대한 취급규정 및 관련사례를 살펴보도록 함
  - 반덤핑제도의 비밀규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음

## 나. 반덤핑소송절차

- 반덤핑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반덤핑 소송을 제기하기 전 「관세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야 하므로 본 장에서는 행정심판을 살펴본 후 반덤핑 소송을 보도록 함

### 1)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를 의미함<sup>32)</sup>
- 반덤핑 관세처분에 대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sup>33)</sup>

31) 조심 2016관0216, 2017. 5. 12

32) 「행정심판법」 제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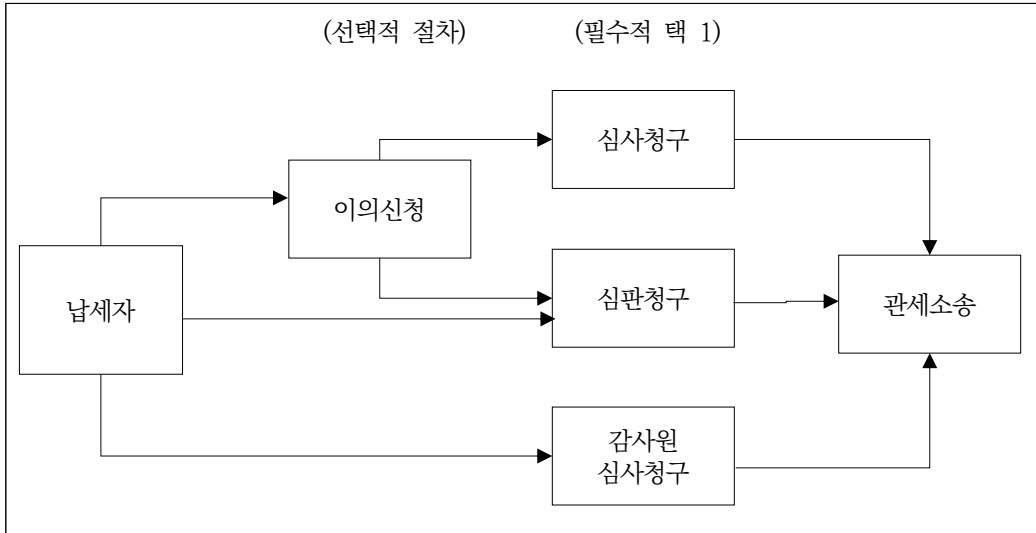
33) 「관세법」 제119조

-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조세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일반적용이 배제되어 관세의 경우 「관세법」 제119조부터 제132조 규정이 우선 적용됨<sup>34)</sup>
  - 관세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법」이 준용되는 부분은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및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등이 있음
  
- 행정심판은 세관장에게 제기하는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1심)과 관세청장·조세심판원장·감사원장에게 제기하는 필수적 전심절차인 심사(심판)청구(2심)로 원칙적 2심제로 구성됨
  - 이의신청은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해당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함
    - 관세행정심판제도상 제1단계이나 임의적 절차에 불과함
  - 다음의 심사(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필수적 전심절차이며 동일처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1곳을 선정하여 제기해야 함
    - 관세청 심사청구는 세관장의 위법 등 과세처분에 대해 그 상급기관인 관세청장에게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함
    - 심판청구는 국세불복의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함
    -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정부로부터 직무상 독립된 지위<sup>35)</sup>에서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 부당한 행위임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는 제도임

34) 소순무, 『조세소송』, 2014.2, p. 187

35) 감사원 고유 업무인 행정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기능에 근거함(헌법 제 97조)

[그림 III-1]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심판 절차



주: 모든 행정심판의 제기는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 이루어져야 함  
 자료: 정재호 외 3인(2015.12), p. 33

-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납세자)임<sup>36)</sup>
  -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가 가능한 이해관계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양도담보권자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등임
-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심사청구의 경우 관세청장, 심판청구의 경우 조세심판원장,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감사원장임
- 행정심판 청구인은 사건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음<sup>37)</sup>

36) 정재호·노영예·박지우·홍현표, 『주요 교역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p. 17

37) 「관세법」 제130조와 「국세기본법」 제58조

-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에 동조(同調)하려는 자는 이를 구술로 해당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음<sup>38)</sup>
  - 열람청구권은 불복청구인이 관계서류열람을 통해 처분의 이유나 근거자료 내용을 파악하여 그에 관한 적절한 주장과 증거 제시를 돕는 데 활용됨<sup>39)</sup>
-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해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계되는 관세사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sup>40)</sup>
- 세관장의 심사청구 의견진술서 작성 또는 청구서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관세사(합동사무소·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관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심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심사(심판)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음<sup>41)</sup>
- 행정심판 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sup>42)</sup>
- 대리인은 청구인 본인을 위해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2) 행정소송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법원의 정식 소송절차를 거치는 행정쟁송절차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조세소송이 포함됨<sup>43)</sup>

3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39) 소순무(2014.2) p. 222

40) 「관세법 시행령」 제145조

41) 「관세법」 제127조 및 「국세기본법」 제72조

42) 「관세법」 제126조

- 반덤핑소송은 반덤핑 관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조세소송에 포함됨
  
- 우리나라는 반덤핑 소송에 대해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행정소송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소송법」이 일반법임을 알 수 있음
  - 단, 「행정소송법」에 흠결된 규정이 있다면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함<sup>44)</sup>
  
- 행정소송은 행정법원(1심), 고등법원(2심), 그리고 대법원(3심)으로 총 3심제임<sup>45)</sup>
  - 제1심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함
    -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 취지를 기재한 뒤 인지를 첨부해야 함
  - 항소심에서의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 내에서 하게 되며,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한 경우 항소를 기각, 부당한 경우 취소, 일부 부당한 경우 일부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을 하게 됨
  - 제2심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제2심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해야 함
    - 단,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상고는 기각됨
  -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며, 상고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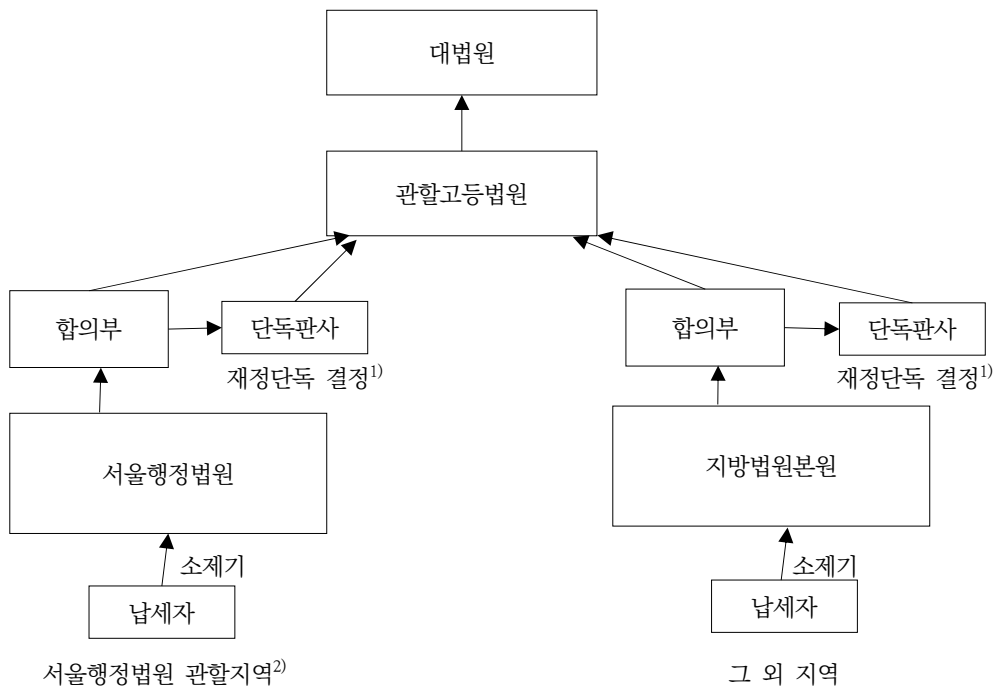
43) 김재식, 「관세행정소송의 변화추이와 주요쟁점」, 『무역연구』 제2권 제3호, 국제무역학회, 2013.6, p. 49

4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45) 제1심 행정법원과 제2심 고등법원은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이 됨

-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 환송이나 이송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해 재판해야 하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는 기속력을 가짐

[그림 Ⅲ-2] 우리나라의 행정소송 심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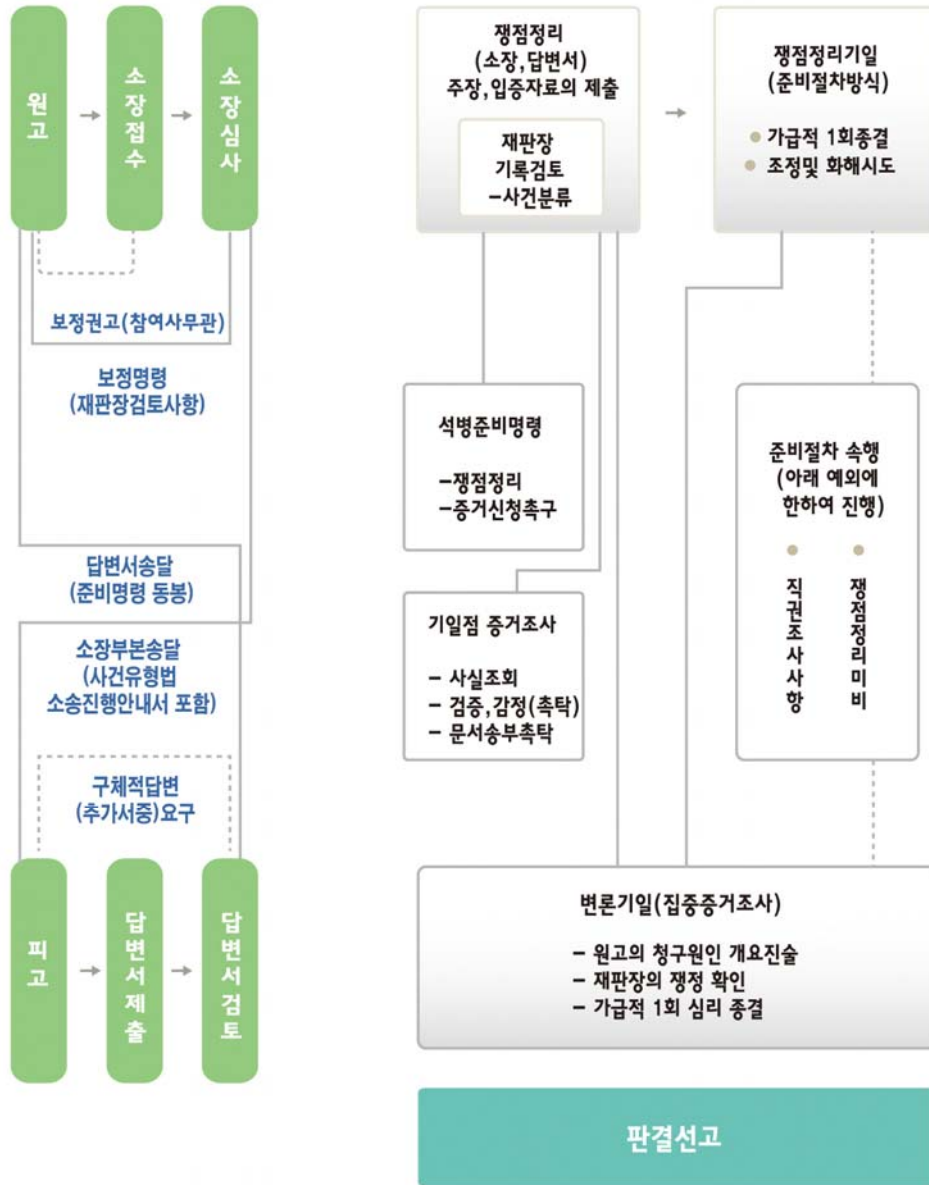


주: 1) 재정단독결정은 사건배당에 앞서 재정결정부가 하는경우와 사건배당을 받은 당해 합의재판부가 그 구성원을 담당판사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음  
 2) 서울특별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6)  
 자료: 소순무, 『조세소송』, 2014.2, p. 262

- 제1심의 행정소송절차는 크게 ① 원고의 소장 제출(소제기) ② 피고의 답변서 제출 ③ 법원의 심리 진행 ④ 판결 선고 등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sup>46)</sup>
-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4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소송 절차 개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29&ccfNo=3&cciNo=1&cnpClsNo=1>, 검색일자: 2018.2.14

[그림 III-3] 우리나라의 제1심 행정소송 절차<sup>1)</sup>



주: 1) 서울행정법원 사건관리 개요도  
 자료: 소순무, 『조세소송』, 2014.2, p.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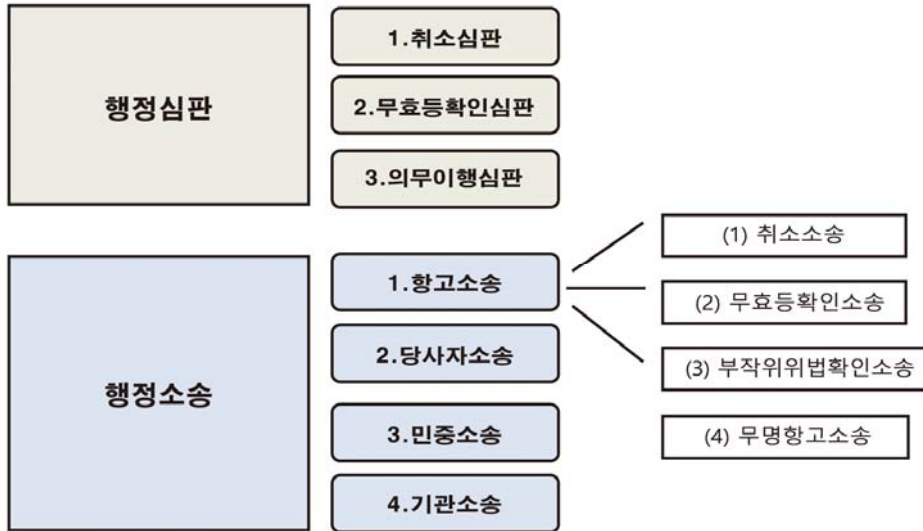
- 피고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 법원은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간 동안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함
    -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을 지정함
    -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된 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함
  -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며,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
    -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음
-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간소송 등 4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중 반덤핑 소송은 항고소송 중 특히 취소소송이 주류를 이룸<sup>47)</sup>
- 항고소송은 납세자가 관세 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며 처분을 한 처분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함<sup>48)</sup>
    - 항고소송은 다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 그리고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함<sup>49)</sup>

47) 「행정소송법」 제3조

48) 처분취소(항소), 무효 등 확인소송(과세관청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자료: 박종수, 『조세소송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6, p. 19

49) 「행정소송법」 제4조

[그림 III-4]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의 종류



자료: 서보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간담회, 2018.2.1

-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하 “처분 등”)로 함<sup>50)</sup>
- 취소소송의 원고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임<sup>51)</sup>
  - 법률상 이익이란 근거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이익(법률상 이익 구체설)을 의미함<sup>52)</sup>
  - 법률상 이익을 원고적격과 결부하여 해석하자면, 원고적격은 원고로 된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제3자가 원고적격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임<sup>53)</sup>

50)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51) 「행정소송법」 제12조

52) 정하중,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신문 오피니언』, 2008.10.9

-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임<sup>54)</sup>
  - 일반적으로 관세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세관장이나, 반덤핑관세의 경우 「관세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를 결정하므로, 세관장과 더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피고적격자가 될 수 있음
  
- 행정심판을 거친 후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함<sup>55)</sup>
  - 단,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경우와 개별 법률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재결이 항소소송의 대상이 됨
  
-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는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만이 가능하나,<sup>56)</sup> 비공개 소송기록에 대해서는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음<sup>57)</sup>
  - 단, 비공개 소송기록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이 가능함
  - 비공개 소송기록이란 다음의 당사자의 개인 사생활비밀이나 영업비밀<sup>58)</sup>을 의미함
    -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53) 소순무(2014.2), pp. 277~278

54) 「행정소송법」 제13조

55)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7, p. 688.

56) 「민사소송법」 제162조

57) 「민사소송법」 제163조

58)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자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결정으로서 재결청에 대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해당 기록을 제출해야 함<sup>59)</sup>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sup>60)</sup>
  
- 행정소송 절차는 공개재판원칙에 따라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함<sup>61)</sup>
  -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재판원칙이 헌법상 규정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변론의 비공개는 절대적 상고 이유로 규정되어 있음
  
- 행정소송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sup>62)</sup>
  -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음
  - 단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그리고 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는 특별권한을 따로 받아야 함

---

59) 「행정소송법」 제25조

60) 「행정소송법」 제26조

61) 주정선, 「민사소송절차에서 공개재판의 원칙과 비밀보호」, 『서강법학』 제2호, 2000.3 p. 188

62) 「민사소송법」 제87조, 제90조

## 다. 비밀정보취급규정 및 사례

### 1) 규정

- 반덤핑관세와 관련하여 정보제출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은 「관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
  - 「WTO 협정」에 따라 국내 관련법을 제·개정하였음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않음
  
-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함

- 제조원가
-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 거래선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 기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반면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할 것을 규정함

-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는 반덤핑조사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sup>63)</sup>,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받은 관계자료, 그리고 덤핑가격수정 또는 수출중지 등의 약속제외에 의해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등이 있음

□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함

63)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반덤핑조사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의 2가지로 구분됨

- ① 반덤핑조사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 3부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2. 당해 물품의 공급국·공급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3.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5.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
  6. 국내의 동종물품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7.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8.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 「관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절차 및 진술에 대한 방법을 규정함

## 2) 관련 사례<sup>64)</sup>

- 「관세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반덤핑 관련 비밀정보 취급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비밀정보로 보지 않는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례가 있음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예외적으로 제9조 제1항의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함<sup>65)</sup>

64) 행정안전부 - 「관세법 시행령」 제6(…)법령해석례, 11-0344

6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비공개정보를 규정함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행정안전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비밀정보요청규정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서의 비밀요청자료규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규율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함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52조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일 뿐, 이를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비밀정보요청규정이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해석함
  -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서류의 공판 개정 전 원칙적 공개금지원칙을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언급함<sup>66)</sup>

-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에서 소송관련서류를 공판 개정 전 공개하지 않는 것(원칙적 공개금지원칙)은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단지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는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관세법」은 반덤핑 관련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에 대해 비공개사항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근거로 사용할 뿐이며 해당 자료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함

## 2. 미국

### 가. 개요

-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상무부의 직권 또는 국내 생산자들의 신청에 의해 개시됨<sup>67)</sup>
- 미국은 덤핑 조사 업무와 산업피해 조사업무가 각각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별도로 수행됨<sup>68)</sup>
  - 덤핑조사 및 덤핑률 산정을 포함한 반덤핑제도 운영 업무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의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서 수행함

66)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67)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ntb.kita.net/import/countryProcedure.screen?menuid=ntb040102>, 검색일자: 2018.2.15

68)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ntb.kita.net/import/countryProcedure.screen?menuid=ntb040102>, 검색일자: 2018.2.15

- 산업피해조사는 독립된 준사법적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서 수행함
- 신청서를 상무부에 접수하고 같은 날에 국제무역위원회에 사본을 제출함
  - 조사 개시는 상무부가 접수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결정함
  
- 미국 상무부가 최종 판정한 반덤핑률과 국제무역위원회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sup>69)</sup>
  - 반덤핑 조치는 철회되기까지 효력이 지속되며 부과 확정된 경우 5년간 효력이 유지됨
  - 판정된 반덤핑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미국연방관보에 최종결과가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국제무역법원에 항소가 가능함
    - 판결에 불복 시 해당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이 가능함
  
- 미국 사법제도는 영국법의 영향으로 영미법 체계를 가지고 있음<sup>70)</sup>
  - 관습법(common law)<sup>71)</sup>이나 판례 위주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sup>72)</sup>
  - 행정법원이 없으며 정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때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일반법원이 처리함
  
- 미국은 50개주가 하나의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으며 각 주마다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 소송 절차는 유사함<sup>73)</sup>
  - 각 심급별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단계의 법원조직을 가지고 있음

69) <http://www.uskoreatrade.org/cit-litigation-%EB%AF%B8%EA%B5%AD-%EA%B5%AD%EC%A0%9C-%ED%86%B5%EC%83%81%EB%B2%95%EC%9B%90-%EC%86%8C%EC%86%A1-%EC%A0%88%EC%B0%A8/>, 검색일자 2017.2.15

70) 박주성, 「미국 행정부의 헌법재판 및 행정소송 대응방법」, 법무연수원, 2011, p. 252

71) 관습에 의하여 형성된 법으로 사법적인 판단이나 관습, 일반적인 원칙의 총합체임

72) 황진영, 『미국 조세법원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0.12,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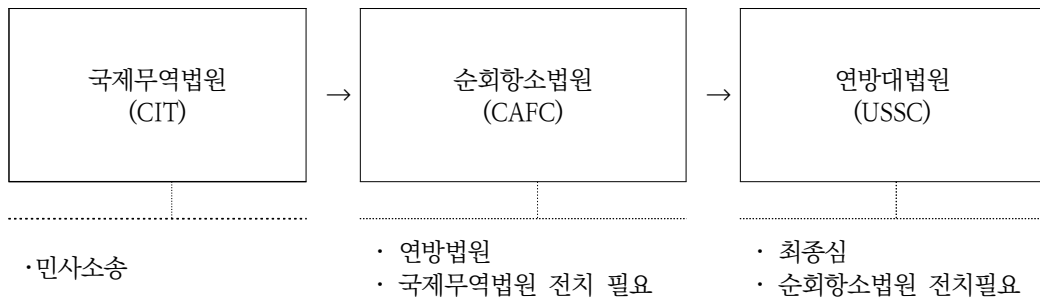
73) 황진영(2010.12), p. 20

- 미국 연방법원의 구성은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연방대법원 순임
  - 반덤핑 소송은 전문법원인 국제무역법원, 연방순회항소법원, 연방대법원의 절차를 거침
  
- 본 장은 미국 반덤핑 조치 후 소송절차, 비밀정보 규정, 소송중의 비밀정보와 관련된 대리인 제도인 APO에 대해 살펴보도록 함

**나. 반덤핑 소송절차**

- 상무부와 미국무역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sup>74)</sup>
  
- 심급체계는 3심제로 최초의 1심은 미국국제무역법원, 2심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3심은 연방대법원(USSC)에서 진행됨<sup>75)</sup>

[그림 Ⅲ-5] 미국 사법심판 절차



자료: 박지우·이재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미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74) 정재호·노영예·박지우·홍현표, 『주요 교역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비교』, 2015.12, p. 48

75) 이학노, 「미국 ITC, ITA의 조직 및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 1) 국제무역법원(CIT)

- 무역분쟁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법령, 국제조약, 대통령, 상무성, 관세청장, 각종의 위원회 등 통상 관련 정부부처의 행정행위 등에 대해 발생함<sup>76)</sup>
  - 국제조약 및 외국과의 통상문제에 관한 정부부처의 행정행위는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법과 같은 위상을 갖거나 연방정부의 권한행사이며 사법심사는 연방차원의 법원이 담당하게 됨
  
- 이에 통상에 관련한 전문법원으로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 CIT)을 1980년에 설립함
  - 9명의 판사로 구성됨<sup>77)</sup>
  - 통상과 관련한 정부조치 등에 관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연방차원의 1심법원임
  - 정부의 일정한 조치 등 행정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며, 통상에 관련한 행정법원의 성격을 가짐
  
- 국제무역법원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음<sup>78)</sup>
  - 반덤핑에 관한 결정 및 조치
    - 위법한 행정재판에 대한 의의
    - 관세산정
    - 관세 청산에 대한 행정명령
    - 북미자유무역지대의 관할권 경합문제
    - 행정계약
  - 상계관세부과
  - 수량제한, 수입금지 등 수입에 관한 결정 및 조치

76) 김기영, 「통상의 국내적 규제와 사법심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2005, p80

77) 박주성, 「미국 행정부의 헌법재판 및 행정소송 대응방법」, 법무연수원, 2011, p252

78) 김기영(2005), p. 80

- 행정적 명령
  - 과금반환 등 금전적 청구
  - 각종 무역관련 허가
  - 지적재산권 관련 결정 및 조치
  - 형식적 하자에 관한 결정 및 조치
- 미국국제무역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 피고는 미국 정부이며 원고는 수입자, 외국의 수출자임<sup>79)</sup>
- 이의제기는 반덤핑 최종판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제무역법원에 소환장(Summons)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됨
- 고소장(Complaint)은 간략한 약식내용으로 소환장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거나 동시에 제출해야 함<sup>80)</sup>
- 상무부가 소환장, 고소장을 접수한 후 분석관은 문제가 되는 절차 부분의 행정기록을 준비함
- 고소장을 제출한 후 당사자들은 브리핑 날짜를 정하게 됨<sup>81)</sup>
- 변호사는 서면을 검토하고 기한 내에 의견을 제공해야 함
- 국제무역법원 소송은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소송임

---

79) Commencement of a civil action<sup>28</sup> U.S.C. 2632,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2631>, 검색일자: 2018.2.16

80) <http://ia.ita.doc.gov/admanual>, 검색일자: 2018.2.16

81) <http://ia.ita.doc.gov/admanual>, 검색일자: 2018.2.16

- 행정기록에 국한하여 검토하며 원심조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논의할 수 없음
- 새로운 자료나 정보를 제출할 수 없음

## 2)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1982년에 설립되어 워싱턴 D.C.에 있음<sup>82)</sup>
- 연방순회항소법원 관할 대상은 국제통상, 정부계약, 특허, 상표, 연방 공무원에 대한 금전청구, 재향군인연금임<sup>83)</sup>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명의 판사로 구성됨
  -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함
  - 미국 연방헌법(제3조)에 의해 종신 법관이 됨
- 미국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 불복 시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가 가능함<sup>84)</sup>
  -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항소가 가능함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쟁점이 된 부분에 관해 심사하도록 함
- 연방순회항소법원 소송은 항소의 제기, 준비서면, 구두 심리, 판결문(Court Opinion)의 절차를 거침<sup>85)</sup>

82) 특허청, 『미국 특허심판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 연구』, 2007.9, p. 46

83) 특허청(2007.9), p. 44

84) 김영조·이재교·김재광, 『주요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연구』, 2005. 7, p. 25

85) 뉴아이퍼비즈, <http://www.newip.biz/interest/?type=view&gkind=7&interestkind=&index=739&page=10>, 검색일자: 2018.2.5

- 항소장에는 항소 제기 사실, 근거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종 결정이 항소 대상이 됨<sup>86)</sup>
- 항소인은 준비서면을 약 50장 이내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sup>87)</sup>
-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제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준비서면에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점을 작성하고 논점을 보충할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법원은 준비서면을 접수 후 구두심리를 진행함
- 구두심리가 끝나면 재판부 법관들은 사건에 대해 토의한 후에 판결문에 반대의 견과 함께 작성함<sup>88)</sup>

### 3) 연방대법원(USSC)

-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 시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 USSC)에 소송제기가 가능함<sup>89)</sup>
  -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미국 헌법에 의해 설립되었음
- 대법원의 다루는 사건은 다음과 같음<sup>90)</sup>
  - 헌법, 법률과 연관된 사건
  - 미국이 당사자이면서 2개 이상의 주가 연관되는 사건
  - 주와 주 사이의 시민들의 사건
  - 내·외국인과 관련한 사건

86) 뉴아이피비즈, <http://www.newip.biz/interest/?type=view&gkind=7&interestkind=&index=739&page=10>, 검색일자: 2018.2.5

87) 뉴아이피비즈, <http://www.newip.biz/interest/?type=view&gkind=7&interestkind=&index=739&page=10>, 검색일자: 2018.2.5

88) 뉴아이피비즈, <http://www.newip.biz/interest/?type=view&gkind=7&interestkind=&index=739&page=10>, 검색일자: 2018.2.5

89) 한상국·박훈,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12, p. 82

90) 한상국·박훈,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12, p. 82

- 연방 항소심에서 패소한 자는 90일 이내에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sup>91)</sup>
  - 상고의 허가는 연방대법원의 재량이므로 연방대법원의 상고허락을 받아야 가능함
  -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하려면 상고허가 청원서(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를 제출해야 함
  
-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허가(Writs of Certiorari)하면 상고인은 준비서면(Briefs)을 작성해야 함
  
- 연방대법원은 각 사건에 대해 구두심리(Oral Arguments) 일정을 정하고, 당사자는 구두변론을 하게 됨
  
- 구두변론이 끝나면 9명의 대법관이 모여 비공개 토론과 투표를 함<sup>92)</sup>
  - 1명의 대법원장과 8명의 부연방 대법관으로 구성됨
  - 비공개 토론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 사안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됨
  - 대법원장은 반반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면 판결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음
    - 투표의 결과가 최소한 5표를 얻으면 승소하게 됨
  
- 대법원장은 투표 후 판결문을 작성 할 대법관을 결정함<sup>93)</sup>
  - 판결문을 작성할 대법관은 다수 쪽의 의견을 낸 대법관 중에 결정함

---

91) 뉴아이피비즈, <http://www.newip.biz/interest/?type=view&gkind=7&interestkind=&index=739&page=10>, 검색일자: 2018.2.5

92) 특허청, 「미국분쟁사례연구과정」, 2008.11

93) 특허청, 「미국분쟁사례연구과정」, 2008.11

## 다. 비밀정보취급규정 및 사례

### 1) 규정

- 반덤핑 조사가 판례와 법률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
- 하지만 반덤핑 조사 절차상 쟁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덤핑률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기업의 비밀정보가 필요함
- 미국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규정은 THE TARIFF ACT OF 1930 sec.777, 19 CFR 103, 19 CFR 351.105, 19 CFR 351.304-305에 명시되어 있음
- 조사 중에 보호될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정보의 종류를 분류하였음
  - 분류된 정보로는 공개정보, 영업비밀정보, 특별분류정보, 기밀정보가 있음
- 공개정보(Public Information)는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정보로 비밀요청이 없는 정보임<sup>94)</sup>
- 영업비밀정보(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BPI)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밀정보 취급이 필요한 이유를 작성하여 사전에 요청을 해야 함<sup>95)</sup>
  - 비밀정보를 제외하고 비밀로 제출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출해야 함

---

94) 19 CFR 351.105

95) 19 CFR 351.304

- 영업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음
  - 생산 공정과 관련된 사업 비밀 또는 거래 비밀
  - 생산원가
  - 유통비용
  - 판매조건
    - 개별판매가격
    - 특정 거래처, 유통업자, 공급업자
    - 개별판매 건에 대한 덤핑률의 정확한 금액
    - 비밀을 제공한 특정인의 목록
    - 조사와 관련된 국내 생산자의 입장
    - 경쟁적 지위에 손해를 끼치는 영업 정보
  
- 특별분류정보(Privileged Information)는 대중 또는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로 APO 관계자들 또한 열람할 수 없음<sup>96)</sup>
  
- 기밀정보(Classified Information)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가해지는 국가안보정보로 1급비밀로 분류됨<sup>97)</sup>
  
- 반덤핑 조사 시 다루게 되는 정보는 공개정보와 영업비밀정보임
  
- 기업의 영업비밀은 정보 공개의 의무에서 예외가 되고 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sup>98)</sup>
  - 영업비밀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된 공개용 요약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sup>99)</sup>

---

96) 19 CFR 351.105

97) 19 CFR 351.105

98) <http://ia.ita.doc.gov/admanual>, 검색일자: 2018.2.13

- 영업비밀 공개요약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약본을 제출할 수 없는 이유가 상세하게 적혀 있는 소명서를 제출해야 함
- 영업비밀이 포함된 서류에는 정보의 주위에 “[ ]” 표시를 해야 함<sup>100)</sup>
  - 해당 항목이 비밀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밀로 취급이 되며 단순히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공개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정보가 될 수 없음
  - 정보 제출자는 APO에 공개를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정보 공개를 유보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정보와 거래처 명단을 이중대괄호 “[ [ ] ]”에 표시해야 함<sup>101)</sup>
  - 공개를 유보해야 하는 자세한 설명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공개용 요약본에 숫자와 관련된 정보는 실제 숫자의 10% 내의 숫자로 기록함<sup>102)</sup>
  - 실제 정보가 1,569.45달러인 경우 10% 내외인 1,412.51달러와 1,726.40달러 사이에 있는 숫자 정보를 기입함<sup>103)</sup>
  - 상무부는 해당 숫자의 범위가 작아서 10%로 계산 시 비밀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정보의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음
  - 숫자 내용이 방대한 경우 최소 1%의 대표적인 수치로 요약해야 함
    - 매출 목록이 500장인 경우 이를 5장으로 요약한 공개요약본을 제출함

---

99) 19 CFR 351.304

100) 19 CFR 351.304(c)(1)

101) 19 CFR 351.304(b)(2)

102) 19 CFR 351.304(c)(1)

103) <http://ia.ita.doc.gov/admanual>, 검색일자: 2018.2.13

- 공개용 요약본에 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치인 2,358,901달러를 쓰는 대신 100이라는 지수로 나타낼 수 있음
  - 주요 항목의 합계는 해당 항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정보는 반영하는 비율로 나타냄

〈표 III-1〉 미국의 공개용 요약본 계산 예

(단위: 달러)

|         | 실제금액        | 공개용 10% 계산  | 공개용 지수(index) |
|---------|-------------|-------------|---------------|
| 매출액     | [2,358,901] | [2,193,778] | [100]         |
| 원자재     | [687,470]   | [742,468]   | [29]          |
| 인건비     | [390,685]   | [378,964]   | [17]          |
| 소모품     | [107,619]   | [113,000]   | [5]           |
| 전력 및 연료 | [255,697]   | [251,350]   | [11]          |

자료: <http://ia.ita.doc.gov/admanual/2015/Chapter%2003%20Access%20to%20Information.pdf>

- 상무부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비밀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sup>104)</sup>
  - 직원들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 시 벌금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음

## 2) APO 제도

- APO(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는 APO 사건관리부에서 발행하는 법률 문서임<sup>105)</sup>

104) <http://ia.ita.doc.gov/admanual>, 검색일자: 2018.2.13

105) <http://ia.ita.doc.gov/admanual>, 검색일자: 2018.2.13

- 상무부나 ITC가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에게 특정 기업의 영업상 비밀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제도임
  -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에게 해당 정보들(답변서, 질의서, 판정문, 보고서 등)을 배포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함
  - 영업비밀정보는 APO 절차에 따라 등록된 자만 열람이 가능함
- APO 제도를 통해 반덤핑, 상계관세의 영업비밀정보(BPI)와 세이프가드의 비밀기업정보(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BI)를 보호함<sup>106)</sup>
- 18 USC 1905에 의해 연방공무원이 획득한 영업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범죄로 정하고 있으나 APO 제도에 따라 영업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예외로 두고 있음<sup>107)</sup>
- 관련 내용은 19 U.S.C.§1677f(c)(1)(A), 19 C.F.R.§351.103, 351.305-.306에 규정되어 있음<sup>108)</sup>
- 규정 이외에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HANDBOOK'에 APO를 신청하는 방법, 신청서 예시, 영업비밀표시법, 비밀정보의 취급법에 대한 정보가 있음
- APO 지정자는 미국, 해외 생산업자, 수입자, 수출자, 미국 노동조합, 외국 정부의 이해관계인들의 대리인만이 신청 가능함
-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법률회사나 컨설팅회사 소속의 변호사, 무역전문가임

106) AN 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PRACTICE IN IMPORT INJURY INVESTIGATIONS,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pub3755.pdf](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pub3755.pdf)

107)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1905>, 검색일자: 2018.2.18

108)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HANDBOOK. <https://enforcement.trade.gov/apo/apo-handbook-20150310.pdf>

- 대리인은 경제 전문가나 무역전문가 등을 대리인의 보조로 고용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보조 또한 APO 목록에 지정되어 있어야 함

- 이해관계인에게 제공받은 정보는 APO에 따라 지정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다음은 제외임
  - 조사 절차상의 거래처 명단
  - 특별분류정보
  - 기밀정보
  - 공개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는 이중 대괄호 “[ ]”가 있는 정보
- 대리인(변호인)만이 비밀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대리인의 능력이 판결 결과에 중요한 요소임<sup>109)</sup>
  - 판결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실력, 평판, 실적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함
- APO 지정자(APO service list) 절차는 다음과 같음<sup>110)</sup>
  - 이해관계인(특정 기업)의 대리인으로 임명됨
  - 대리인은 조사를 위한 비밀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에 Form ITA-367을 작성하여 신고(APO Application)하는 절차를 거침
  - 상대방 이해관계자가 대리인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30일 안에 해결해야 함
  - 반대가 없다면 5일 안에 승인이 나고 각 이해관계자에게 메일이 발송됨
  - Enforcement and Compliance 홈페이지<sup>111)</sup>에서 APO 지정자목록(APO service list)을 확인할 수 있음

109) 외교부,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2017.12, p. 62

110) 19 CFR 351.305

111) Enforcement and Compliance, <https://enforcement.trade.gov/apo/apo-svc-lists.html>, 검색일자: 2018.02.10

□ APO 지정자는 다음을 지켜야 함

- APO 제도를 통해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들만 기밀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정자는 수출자의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동 정보를 이해관계인에게는 공개해서는 안 됨
- APO 정보는 오직 허가된 조사 절차 중에만 사용해야 함
  - 지정자는 정보의 제공자가 다른 조사 절차에 APO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이상 다른 조사에서 현재 허가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
- APO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 함
- 규칙을 위반 시 바로 보고해야 함
- 규칙을 위반 시 제재를 받게 됨

□ APO 전자정보 자료 이용 시 규칙은 다음과 같음

- 지정자 이외에 사람이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APO 자료를 저장하는 컴퓨터는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따로 써야 함
- 자료를 저장하는 컴퓨터 폴더에는 제한을 걸어놓아야 함
-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다운받을 때는 컴퓨터에 임시저장이 되므로 자료를 이용 후 히스토리를 삭제해야 함

□ APO 보호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제출자에 의해 비밀정보 보호가 요청된 서류
- 제출자에 의해 요청되었으나 아직 비밀정보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 재요청 기간까지도 비밀정보로 보호받음
- APO 보호 정보가 들어간 초안서류, 차트, 그래프
- APO 보호가 적용되는 정보에 대한 구두 토론

- APO 정보 식별과 표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업비밀 정보는 “[ ]”, “[[ ]]”를 사용함<sup>112)</sup>
    - 비밀을 강조하기 위해 “[[[ ]]”, “[[[[ ]]]]” 3, 4개의 괄호를 사용하면 혼돈이 일어나 정보 유출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sup>113)</sup>
  - 자료 보호를 위해 “Business Proprietary Treatment Requested.” 표기를 해야 함
  - 이전에는 비밀정보를 빨간색으로 표기를 한 적도 있었음<sup>114)</sup>
    - 현재에는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정보를 식별하는 보조적 방법이 될 수는 있음
  
- 공개 청문회 중에 비밀정보 논의를 위해서는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음<sup>115)</sup>
  - APO 사건관리부는 비공개회의 개최하기 위해 이해관계인들에게 서신을 보내야 함
  - 회의 시 논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APO 사건관리부와 협의해야 함
  - 분석관은 비공개 회의를 지정된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함
  
- APO 정보 관리는 APO 사건관리부에서 담당함
  - APO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를 절차에 따라 통제를 함
  - 관련 업무에 대한 공식적인 명령을 기록해야 함
  - 비밀정보 취급과 관련된 자문 및 기술적 조언을 함
  
- APO 정보의 비밀 위반 문제 발생 시 바로 사건관리부에 보고해야 함<sup>116)</sup>
  - 다른 조사에서 영업비밀정보가 넘어왔거나 다른 조사로 현재 정보가 넘겨지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 부서와 협의해야 함
  - 사건관리부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함

---

112) 19 CFR 351.304

113)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HANDBOOK. <https://enforcement.trade.gov/apo/apo-handbook-20150310.pdf>

114)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HANDBOOK. <https://enforcement.trade.gov/apo/apo-handbook-20150310.pdf>

115) 19 CFR 351.310(f)

116)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351.306>

- 비밀 위반된 모든 정보의 사본을 회수해야 함
  - APO 위반 주장은 비밀로 관리됨
  - 회수가 완료된 후 조사를 개시함
- APO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얻는 효과들은 다음과 같음<sup>117)</sup>
- 이해관계자의 각 대리인들에게 모든 영업비밀을 공개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어떤 정보를 통해 판정의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의심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상대방의 정보를 통해 당사자를 방어할 수 있음
  - 각 이해당사자들의 대리인이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판결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잘못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소송의 횡수가 줄어들 수 있음
  - 전자정보로 변환된 영업비밀정보가 해킹을 통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은 APO 제도의 잠재적인 문제임
  - APO 제도는 이해관계인의 소송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 APO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APO 지정자(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며 지정하지 않을 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함

### 3. EU

#### 가. 개요

- 유럽연합(이하 “EU”)은 「유럽연합운영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207조에 따라 제3국(역외국)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포함한 공동통상정책을 수립함

117) bkp DEVELOPMENT RESEARCH & CONSULTING, Evaluation of the EU's trade defence instruments(volume 1), 2012.2

- 반덤핑 피해조사와 산정에 대한 판단은 EU 기관인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an Union)와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주관하며 EU 회원국은 EU 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함
- EU 기관의 반덤핑조치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sup>118)</sup>
  - EU 산업대표자는 집행위원회에 반덤핑조사를 요청함<sup>119)</sup>
  - 집행위원회와 자문위원회(반덤핑 위원회)는 조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5일 기간 동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해당 개시결정을 EU 관보에 공고함
  - 반덤핑 조사는 가능한 한 1년 이내 종결되어야 하며, 가격약속 및 확정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된 조사는 15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함
  - 조사결과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해당 외국물품에 잠정관세를 부과함(반덤핑규칙 제7조4항)
  - 집행위원회는 각료이사회에게 반덤핑 확정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며 각료이사회는 제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순다수결로 제안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함(반덤핑규칙 제9조4항)
- EU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EU 기관이 전적으로 판단 및 결정한 반덤핑 조치를 받아들인 후 회원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함<sup>120)</sup>
- EU에서의 관세정책 및 입법은 EU 관할에 속하며, EU 회원국은 「관세법」 집행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해 관할권을 가짐<sup>121)</sup>

118) 이환규, 「EU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1, pp. 359~362

119)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① 덤핑의 존재 ②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EU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를 입을 우려 ③ 덤핑과 실질적 피해간 인과관계 존재 ④ 반덤핑조치 결정이 EU 공익(EU interest)에 반하지 않아야 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20) 코트라, 「국가개요: 독일-수입규제제도」

121) 이세정·박영도·강현철·이상윤·김승열·한귀현, 『관세법 분법 연구』, 법제처, 2013.10, p.119.

- 이하에서는 EU 기관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 불복인 EU사법재판소(ECJ)로의 행정 소송절차와 비밀정보 취급규정에 대해 살펴봄
  - 유럽법이 직접 EU 기관에 의해 집행될 경우 권리보호의 임무는 당연히 유럽법원에 주어지므로 이들 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한 소송에 관해 국내 법원은 관할권이 없음<sup>122)</sup>

#### 나. 반덤핑 소송 절차<sup>123)</sup>

- EU 기관의 반덤핑조치 행위에 불복을 제기하는 자는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263조에 따라 EU 사법재판소를 통해 무효 소송(actions for annulment)을 진행할 수 있음<sup>124)</sup>
  - 행정심판제도가 별도로 없으므로 바로 EU의 일반법원(the General Court)에 소송을 제기함
- EU 기관의 반덤핑조치행위에 대한 EU 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조약」(Treaty of European Union, TEU) 제19조, 제340조 및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258조부터 제260조, 제263조 내지 제267조에 규정되어 있음<sup>125)</sup>
  - EU의 모든 행위는 EU회원국이 협상, 합의하고 자국의 비준을 받은 「유럽연합조약」(TEU)과 「유럽연합기능조약」(TFEU)을 근거로 함
- EU의 사법부는 EU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ECJ), 일반법원(the General Court)<sup>126)</sup>, 전문(특별)법원(specialized court)으로 구성<sup>127)</sup>되며 반덤핑조치에 대

122) 김중권, 「유럽행정법상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시스템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1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2.10, p.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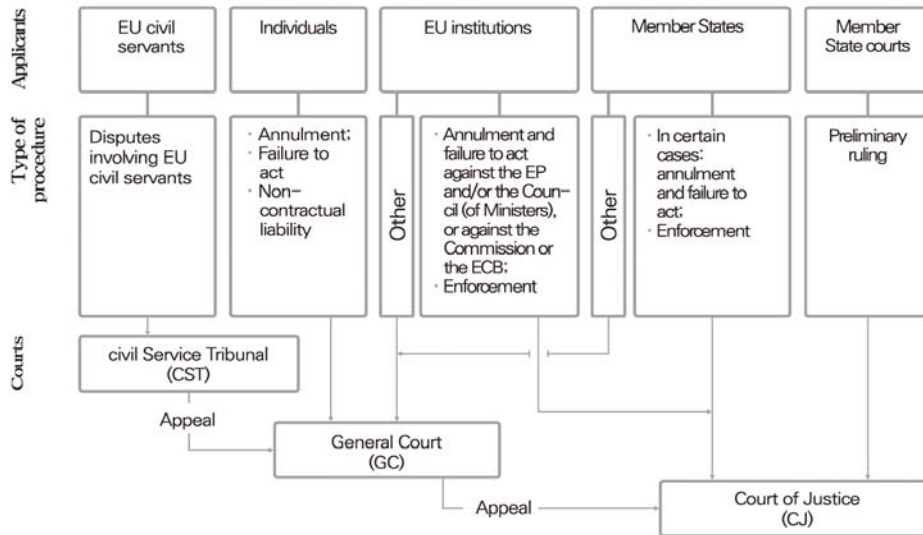
123) EUR-Lex.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12012E%2FTXT>, 검색일자: 2018.2.14

124) 김중권(2012.10), p. 315

125) 2009년에 발효된 EC조약 및 EC설립을 개정하는 리스본조약의 통합버전임

- 한 소송은 일반법원(1심)을 거쳐 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하는 2심제로 구성됨
- 일반법원은 사법재판소(ECJ)에 유보된 사건을 제외한 무효소송, 부작위 소송, 직원소송 및 계약상 중재소송에 따른 재판의 1심 소송을 심사하고 결정함
    - 무효화 소송에서 자연인과 법인은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non privileged applicants)이므로 해당 소는 제1심재판소인 일반법원에서 관할함<sup>128)</sup>
  - 전문법원은 유럽연합과 그 소속 공무원 사이의 분쟁을 제1심으로 관할함

[그림 III-6] EU 사법재판소의 구조



Annulment: 무효소송    Failure to act: 부작위소송    Enforcement: 이행소송

Non-contractual liability: 비계약상책임    Preliminary ruling: 선결적 판결

자료: 변지영,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10, p. 39

126) 1989년 설립된 제1심재판소(the Court of First instance, CFI)에서 2009년 리스본조약으로 인해 일반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127) 변지영,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10, p.37

128) 강수경(2007.2), p. 60

- 사법재판소(ECJ)의 소송절차는 크게 ① 소장제출 ② 준비절차 ③ 심리 및 법률고문관 의견 ④ 합의 및 판결 등 4단계로 구분됨<sup>129)</sup>
- 당사자는 EU기관 행위의 공표 또는 당사자에게 통고,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를 안 날로부터 2월 이내 소장을 제출해야 함<sup>130)</sup>
    - 소제기 즉시 재판장은 사건의 보고판사(Judge-Rapporteur)<sup>131)</sup>를 지정하고 최고 법률고문관은 사건을 법률고문관에 배당해야 함
    - 당사자와 관련 EU 기관에 전달되는 모든 소장, 답변서 및 관련문서와 복사본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재판장은 보고판사에게 재판소에 제출할 사전보고서를 제출할 기일을 정하고 법률고문관에게 의견을 들은 후 취할 조치를 결정해야 함
    - 사전보고서에는 i) 절차에서 특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ii) 질의의 방법 또는 국내법원에 쟁점 명확화를 요구해야 하는지 iii) 사건이 어떤 재판부에 배당되어야 하는지 iv) 구술변론 절차가 필요한지 v) 공식적인 법률고문관 의견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 보고판사의 의견이 포함됨
  - 심리는 구술변론 요청이 있는 경우 진행하나, 재판장이 서면절차에 따라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변론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구술변론은 서면단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3주 내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해야 함
    - 구술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회원국 안보나 미성년자 보호와 같은 특정 이유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
  - 합의과정에 참여하는 판사는 자신의 의견과 해당의견을 제시한 이유를 진술하며, 최종 회의가 있는 후 과반수의 판사에 의한 결론이 공개법정에서 판결로서 선고됨

129) 변지영(2016.10), pp. 51~52

130)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263조 제5단

131) 보고판사란 회의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에 관한 공식적인 보고서의 제출을 담당하는 자를 말함

- 합의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구술변론에 참여한 판사와 이와 관련된 부보고판사만이 참여 가능함

□ 사법재판소(ECJ)의 소송 관할은 크게 직접소송(direct actions)과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s)로 나뉘며, 반덤핑소송은 직접소송 중 무효소송임

- 사법재판소(ECJ)의 관할은 크게 ① 회원국, 기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제기한 소에 대해 판결하고 ② 회원국의 법원이나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기관이 채택한 행위의 유효성이나 EU법 해석에 관한 선결적 판결을 하고 ③ 기타 조약에 규정된 다른 사건들에 대해 판결함<sup>132)</sup>
- 무효소송은 형성소송인 취소소송으로서 소가 이유 있다면 사법재판소(ECJ)는 다툼이 있는 법적 행위를 무효(nichtig)라고 판시하며 이를 통해 그 법적행위는 폐지됨<sup>133)</sup>

□ EU 기관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EU 기관을 대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sup>134)</sup>

- 자연인과 법인은 EU기관의 행위가 ① 효력(수취)의 대상이 있는 결정이거나 ② 개인과 직접적 및 개별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규제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즉, EU 기관의 반덤핑조치로 인해 자신의 법적지위를 제한(침해)받아야 하고 (관련성), 제재행위의 직접성(직접이익침해당사자)을 가져야 함을 의미함<sup>135)</sup>

□ 사법재판소(ECJ)는 EU 입법, 각료이사회의 행위, 집행위원회의 행위,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행위의 합법성 등 EU법의 유효성에 대해 직접적인 심사를 할 수 있음<sup>136)</sup>

132) 유럽연합조약(TEU) 제19조

133) 김중권(2012.10), p. 316

134)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207조 제4항 및 채형복, 『EU 반덤핑법』, 높이깊이, 2009.8, p. 164

135) 김중권(2012.10), pp. 316~317

136)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263조와 제264조

- EU 기관의 법적 행위가 ① 권한의 결여(무권한) ② 중요한 절차적 규정의 위반 ③ 조약이나 적용법 규범의 위반 ④ 권한(재량)남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무효 소송은 인용됨
  
- 소송에 사용된 모든 정보와 자료는 소송 당사자 간 완전히 공유되어야 하나<sup>137)</sup>,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 단계에서 소송 상대방에게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를 검사(examination)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함<sup>138)</sup>
  - 법원은 정보 공개 여부를 검사 후 비밀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함
    - 공개하는 경우 특정 사업내용만을 공개할 수 있음
    - 비공개하는 경우 가능한 한 소송 당사자의 견해를 알 수 있는 내용과 소송의 필수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
  - 단, EU 기관에서 접근을 거부한 비밀자료는 소송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음<sup>139)</sup>
  
- EU 회원국 거주자, 등록된 사무소를 갖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등 모든 EU 회원국의 시민은 EU 기관, 기구 및 제부서의 문서에 접근할 권리(이하 문서 접근권)를 가짐<sup>140)</sup>
  - 공공 또는 사적 이익에 대한 문서 접근권의 일반원칙 및 제한 범위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집행위원회가 수립함
  - EU 기관, 기구 및 제부서는 문서 접근권에 대한 절차를 자체 규정으로 만들어야 함
  - EU 사법재판소, EU 중앙은행 및 EU 투자은행은 행정 업무 수행 시에만 문서 접근권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음

137) 일반법원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 OF THE GENERAL COURT) 제64조,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15.105.01.0001.01.ENG](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15.105.01.0001.01.ENG), 검색일자: 2018.2.21

138) 일반법원절차규칙 제103조

139) 일반법원절차규칙 제104조

140)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15조 및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41조 제4항

- 구술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 진행되나 합의과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최종판결은 공개법정에서 선고됨<sup>141)</sup>
  - 구술심리는 회원국의 안보나 미성년자의 보호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
  - 합의과정은 구술변론을 진행한 경우, 그 변론에 참여한 판사만이 합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 사법재판소의 모든 소송 절차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은 반드시 회원국 국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나 유럽경제지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함<sup>142)</sup>
  - 단, 회원국 및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국가와 EU 기구들은 각각의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므로 변호사 요건을 제외함
  - 또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법률 구조(legal aid)를 신청하는 자는 예외로 함
  
- EU는 반덤핑 조치의 내용과 집행위원회의 역할을 심사하는 청문관(Hearing Officer) 제도를 운영중임<sup>143)</sup>
  - 청문관의 역할은 공개용 요약서의 내용이 충분한지 검토하고 비밀정보가 특정 이해당사자와 관련 있는지 여부, 집행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의 정확성 판단 여부 등임

---

141) 변지영(2016.10), p. 52

142) 원출처: Rules of Procedure of the Court of Justice Article 19, 변지영(2016.10), p. 52

143) Evaluation of the European Union's Trade Defence Instruments - Final Evaluation Study, bkp Development Research & Consulting, 27 Feb. 2012

## 다. 비밀정보취급규정 및 사례

### 1) 규정

-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207조에 따라 「EU 반덤핑 규칙」은 EU의 제2차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EU 회원국은 이를 국내법에 의무적으로 직접 적용함
  - 정식명칭은 「유럽공동체의 비회원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에 대한 보호에 관한 이사회 규칙」(2016/1036 eu)임<sup>144)</sup>
  - 직접 적용(directly applicable)이란 EU 규칙의 국내법 편입을 위한 입법절차가 필요 없이 직접 적용된다는 것임<sup>145)</sup>
- 「반덤핑 규칙」에는 반덤핑조사에 활용된 비밀정보(영업비밀)의 비공개 규정과 반덤핑 조사대상자(피조사자)의 반덤핑조사에 활용된 정보 접근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두 개의 상반된 규정을 살펴봄
- 「반덤핑 규칙」 제19조에 따라 반덤핑조사에 제시된 본질적인 비밀 정보 또는 조사 당사자가 비밀리에 제공한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U 기관(authorities)에 의해 처리되어야 함
  - 본질적인 기밀 정보란 공개가 경쟁자에게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의미함
- EU 기관(authorities)은 비밀 유지 요청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 및 해당 공무원들은 정보 제공자의 특정 허가 없이 비밀 유지요청 처리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

144) REGULATION(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145) 강수경(2007.2), p. 52

-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이해 당사자는 비밀정보에 대한 요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정보가 요약될 수 없는 경우 요약이 불가능한 이유를 기술해야 함
  - 요약서는 충분히 신뢰성 있게 제출된 정보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함
  
- EU 기관(authorities)은 다음과 같이 당사자 정보에 대한 출처를 정확히 또는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정보공개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비밀유지요청이 보증되지 않은 경우
  -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거나 제공된 정보에 대해 EU 기관(authorities)이 일반화되거나 요약된 형태의 정보 공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 EU 기관(authorities)은 당사자의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일반 정보, 반덤핑조치가 취해진 결정의 근거, 그리고 EU 기관이 의존한 증거를 공개해야 함
  
-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 간 교환한 정보 또는 EU 기관(authorities)이나 EU 회원국이 작성한 내부 문서는 반덤핑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음
  
- 한편, 「반덤핑 규칙」 제20조에 따라 반덤핑조사가 진행 중인 자(피조사자)는 반덤핑조치가 부과된 근거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the essential facts)와 고려사항(considerations)의 기초가 되는 세부사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항의자(complainants), 수입자, 수출자, 수출입자의 대표 단체, 그리고 수출국 대표자의 정보공개요청은 잠정조치 부과 직후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정보공개는 가능한 한 요청 직후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 피조사자는 반덤핑 조치의 최종결정<sup>146)</sup>과 잠정조치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해당 정보의 본질적인 요소와 고려사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결정의 공개 요청은 잠정 관세가 부과된 경우 부과일로부터 1개월 내, 잠정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집행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함
  - 정보 공개는 비밀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에 따른 조치 개시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함
- 집행위원회는 반덤핑 조치의 최종결정을 공개 후 이해관계인의 견해를 10일 동안 접수 받음
- 반덤핑조치의 추가 조치가 주어지는 경우 견해를 위한 기간은 더 짧은 기간이 설정될 수 있음

## 2) 사례<sup>147)</sup>

- EU 사법재판소(ECJ)를 통한 반덤핑소송에서 이해 당사자의 방어권(the rights of defence)의 일종인 문서 접근권이란 EU 기관이 기밀로 분류하지 않은 문서라면 반덤핑조사에 관련된 자(소송 청구인)들은 제기된 문제와 관련한 문서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sup>148)</sup>
- 회원국에 거주하거나 등록사무소를 가진 모든 연합시민, 자연인 또는 법인은 EU 기관 등의 문서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데, 이에 따라 반덤핑소송의 청구인이 EU 내 수입업자이거나 EU 이외의 수출업자라도 법인이면서 EU 내 등록사무소를 갖고 있으면 문서 접근권을 갖게 됨<sup>149)</sup>

146) 반덤핑 관세부과 또는 약속의 제안

147) ILO,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rights of defence in EU trade defence proceedings", <http://www.internationallawoffice.com/> 검색일자: 2018.2.19

148) 김세환, 「EU 반덤핑법에 관한 사례 연구」, 『공법연구』 제42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13, 12, pp. 257~258

149) 「유럽연합운영조약」 제15조,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2조

- 방어권이 인정되는 관련 당사자는 반덤핑조사가 진행 중인 자(피조사자)들에 한하므로 반덤핑조사 제소자와 그 외의 제3자 등에는 인정되지 않음
- EU 집행위원회가 반덤핑조사에 활용된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피조사자의 문서 접근권을 박탈한 것이 인정되어 반덤핑조치가 무효화된 사례가 있어 이를 살펴봄<sup>150)</sup>
- EU 집행위원회는 중국기업<sup>151)</sup>의 정상가격 결정에 사용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는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박탈함
  - EU 집행위원회는 덤핑 마진 산정을 위한 정상가격을 중국기업의 수출가격과 인도산 동종물품<sup>152)</sup>의 정상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였음
    - 정상가격의 결정은 인도 생산자의 정보(제3자의 정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sup>153)</sup> 유럽 집행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수출자 또는 다른 이해 관계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집행위원회는 인도 생산자가 중국 기업에 정상가격 결정에 사용된 본인의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도록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 공개를 거부함
- 이에 중국기업은 일반법원(제1심)(the General Court)에 반덤핑 조치 무효화 소송을 제기함
  - 중국기업은 위원회의 정상가격 결정 방법이 「EU 반덤핑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와 고려사항이라고 주장함
  - 또한 인도 생산자가 동종물품의 정보를 허가하였으므로, 정상가격 방법은 더 이상 비밀정보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함

---

150) EU Case T-424 / 13

151) 중국의 가단주철(malleable cast iron) 나선형 관(threaded tube)과 파이프 구조부품(pipe cast)을 생산하는 제남(Jinan Meide Casting)기업

152) 인도 생산자 제이슨 인더스트리(Jainson Industries) 생산물품

153) 중국은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ics)이기 때문에 제3의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수출물품의 동종물품 통상거래가격 또는 제3국으로의 수출 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채택함

- 일반법원(the General Court)은 중국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당했음을 인정하여 집행위원회의 반덤핑 조치를 무효화함
  - 집행위원회는 ① 인도 생산자의 정보공개허가는 위원회에 제출한 정보에 국한되는 것이지, 정상가격 결정방법 자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② 특정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기밀성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이를 공개 시 다른 수출 생산자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집행위원회의 영업비밀 보장의무가 관련 당사국(수출업자)의 절차상 안전장치인 방어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 반덤핑 조사에서 비밀이 보장되는 정보더라도, 집행위원회가 청구인과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증거를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고 공개를 절대적으로 거부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함
  
- 추가로 반덤핑 조치에 활용된 비밀정보 보호와 청구인 방어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만 허가된 비밀정보 접근의 사례를 소개함<sup>154)</sup>
  - 반덤핑 조치에 활용된 비밀정보(정상가격 산출방법, 덤핑마진계산, 피해금액 계산 등)는 오직 집행위원회만이 열람할 수 있는데<sup>155)</sup> 그 이유는 제3자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
    - 덤핑 피조사자의 물품이 EU 시장에 수출된 실적이 없다면 집행위원회는 덤핑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활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며, 또한 비시장경제국의 덤핑물품은 제3국의 구성가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함
  - 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타방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이고 충분히 상세하게 작성된 공개용 요약본을 제공해야 함

154) who's wholegal "Confidentiality and Rights of Defence in EU Trade Defence Investigations: Transparency is Good for You", <http://whoswholegal.com/news/features/article/34255/confidentiality-rights-defence-eu-trade-defence-investigations-transparency-good-you>, 검색일자: 2018.2.22

155) 모든 이해 당사자는 부분적으로만 열람할 수 있고, 특히 타방의 비밀정보는 접근할 수 없음

- 비밀정보의 요약이 어려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 실제 공개용 요약본은 너무도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해당 내용을 근거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내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토할 수 없어 절차상 방어권을 활용하는 데 충분하지 못함
  - 청구인 방어권의 침해에 대해 EC 항소기구와 중국의 WTO 분쟁기구 패널은 집행위원회의 비밀정보취급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을 지적함
    - EC 항소기구는 집행위원회는 비밀정보 취급의 필요성에 대해 그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such a good cause)가 입증되지 않으면 「WTO 협정」 제6.5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언급함
    - 중국의 WTO 패널은 집행위원회는 우선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를 기밀로 할 필요성으로 인해 요약을 하더라도 본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의 요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함
  - 집행위원회의 비밀정보보호와 청구인 방어권의 대립과 관련하여, 제1심 일반법원은 집행위원회에게 반덤핑조치 절차에 수행된 각종 산정방법과 분석에 대한 비밀정보의 완전한 접근을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한 사례가 있음
    - 해당 권한은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사무국(Registry) 관계자의 감시하에 록셈부르크의 일반 법원 사무국 컴퓨터에서 데이터 및 계산을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비밀유지를 지키도록 요구되었음
- 한편, EU사법재판소(ECJ)가 청구인 방어권을 EU 기관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도구로 활용한 사례도 있음<sup>156)</sup>
- EU 기관이 청구인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견해를 듣는 기간을 축소해서 청구인이 견해를 밝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때라야 비로소 EU 기관의 절차적 권리의 침해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음

156) 김세환(2013), pp. 257~258

- EU기관은 반덤핑 조치를 취한 법적근거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동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10일의 기간이 주어짐
- EU 기관이 문서접근을 부인하더라도 관련당사자가 다른 수단을 통해 증거를 획득하여 견해를 표명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를 EU 기관의 방어권 침해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음

##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 국제비교

#### 가. 반덤핑소송절차

- 미국은 반덤핑소송에 대해 전문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EU, WTO는 일반적인 법원을 통해 소송을 처리함
  - 미국은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통상에 관련한 행정법원의 성격을 가진 국제무역법원이 별도로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은 반덤핑소송을 3심제에 걸쳐 진행하는데 반해 WTO과 EU는 원칙적으로 2심제를 운영함
  - EU 기관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1심법원에서 관할하고, EU회원국의 국내소송에서의 EU 기관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선결재정은 최종심인 EU사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는 특이점이 있음
  
- WTO와 우리나라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였음
  - WTO의 경우 패널선정 전 양자합의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본다면 전치주의를 규정한 것임
  
- WTO를 제외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소송심리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주의를 따름
  - WTO는 양자합의, 패널심리 및 상고심리 모두 비공개로 진행함

## 나. 비밀정보 보호체계와 대리인

- 비밀정보 보호체계는 공개, 제한적 공개, 비공개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EU는 2원적, 미국은 3원적, WTO는 2원적과 3원적을 모두 수용함<sup>157)</sup>
  - 우리나라와 EU는 2원적 비밀정보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음
  - WTO 협정은 2원적, 3원적 비밀정보보호 체계를 모두 허용하고 있음
    - WTO 협정 제6.5조에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며 정보를 제출하는 제공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공개될 수 없음을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2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예외적으로 "회원국은 특정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제한적인 보호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라고 명시하여 제한적 공개인 3원적 체계가 가능함
  - 미국은 비밀정보를 공개, 비공개 이외에 제한적 공개를 포함하여 3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제한적인 공개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비밀정보가 특별히 소송인의 대리인(변호사)에게만 공개되는 것을 말함
  
-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WTO 및 EU는 소송기록 중 비밀정보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정함
  - 미국은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만이 비밀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
  - EU는 법원이 조사한 비밀정보의 공개 여부를 검사한 뒤, 소송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비공개하는 경우 소송 당사자의 견해와 해당 사건의 공개용 요약서를 제공함

157) 비밀정보 보호체계란 보호단계를 공개, 비공개, 제한적인 공개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이상윤, 「영업상비밀보호 및 정보공개운영규정연구」, p. 7

- 미국은 소송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변호사)만이 비밀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만든 APO 제도가 있음
  - 정보를 제한적으로 대리인에게만 공개하며 소송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
  - 정보를 분류하여 종류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다름
  - 공개 청문회 진행 중에도 비밀정보를 다룰 때는 비공개 회의가 가능함
  - APO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사람은 비밀유지 의무가 부여되고 정보의 유출 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대리인이 되기 위한 지정된 절차가 존재하며 사건관리부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음

#### 다. 공개용 요약본

-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주요국은 반덤핑조치에 활용된 정보 중 비밀정보를 제외하고 요약문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반덤핑 관련 법령에 공개요약본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명시하여 반덤핑 소송 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도움
  - 영업의 매출액, 인건비 등을 표시할 때 대략적인 숫자를 10% 범위에서 쓰거나 분량이 많은 숫자를 다룰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규정되어 편의를 도움

#### 라. 비밀정보요청권과 정보공개청구권

-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주요국은 반덤핑조치에 활용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비밀정보요청권이란 반덤핑 조사 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반덤핑조치에 활용된 정보 중 정당한 이유(good cause)를 제시하며 비밀로서 취급하길 원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될 수 있는 권리를 뜻함
  - 미국, EU와 WTO 모두 정당한 이유와 비밀보호 요청이 있어야만 비밀정보가 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미국의 경우 WTO 협정의 비밀정보 규정을 발전시켜 비밀정보의 대상, 심사, 취급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음
-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반덤핑조치의 비밀정보 요청과 대비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을 규정함
- 정보공개청구권이란 반덤핑 조치를 행한 당국에게 반덤핑조치에 근거가 되는 본질적인 요소와 조치를 위한 고려사항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이해당사자의 권리임
  - 미국은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APO 제도를 통해 판결 이전에 중요 정보가 대리인에게 공개되어 재판의 투명성이 보장되므로 해당 규정의 부재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마. 비밀정보 취급규정 관련 사례

- 마지막으로 반덤핑조사에 사용된 비밀정보의 취급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사례를 요약함
- WTO는 비밀보호요청권에 대한 사례로, 반덤핑협정 제6.5조에 따라 기업이 정보를 제출할 때 비밀 취급 요청을 했는지의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비밀정보요청이 없었으므로 비밀정보로 취급한 것은 위반이라고 판결함
  - EU는 정보공개요청권에 대한 사례로, EU 일반법원(1심)은 반덤핑조사에 활용된 비밀정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방어권인 정보공개요청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이에 더하여 EU는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만 비밀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비밀발설금지조항을 추가하여 비밀정보보호와 청구인방어권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함
  - 미국은 비밀정보청구권과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 반덤핑조사에 사용된 비밀정보는 소송당사자가 지정한 APO만이 열람할 수 있는 별도 제도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사에 사용된 비밀정보의 해석에 대한 사례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반덤핑조사에 사용된 비밀정보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례가 있음
- 우리나라와 WTO, 미국 및 EU의 반덤핑소송절차를 <표 IV-1>와 같이 비교하여 정리함

<표 IV-1> 반덤핑소송절차와 비밀유지취급규정 국제비교

| 구분 |              | WTO             | 미국              | EU                                 | 우리나라              |             |
|----|--------------|-----------------|-----------------|------------------------------------|-------------------|-------------|
| 1  | 전문법원의 존재     | ×               | ○ <sup>1)</sup> | ×                                  | ×                 |             |
|    | 반덤핑소송의 심급    | 2심제             | 3심제             | 2심제                                | 3심제               |             |
|    | 행정심판 전치주의 여부 | ○ <sup>2)</sup> | ×               | ×                                  | ○                 |             |
|    | 소송심리 공개여부    | 비공개             | 공개              | 공개 <sup>3)</sup>                   | 공개                |             |
| 2  | 비밀정보 보호체제    | 2·3원화           | 3원화             | 2원화                                | 2원화               |             |
|    | 소송 기록 관련 규정  | 열람 가능자          | 당사자             | APO지정자                             | 당사자 <sup>4)</sup> | 당사자         |
|    |              | 관련 규정           | 분쟁해결협정 제18조     | 19 U.S.C.§1677f, 19 C.F.R.§351.103 | 일반법원절차 규칙 제103조   | 민사소송법 제163조 |

| 구분 |                        | WTO  | 미국  | EU  | 우리나라  |
|----|------------------------|--|---|---|---|
| 3  | 공개용<br>요약본<br>관련<br>규정 | 관련<br>규정<br>반덤핑 협정<br>제6.5.1조              | 19 CFR<br>351.304   | 반덤핑 규칙<br>제19조  | 관세법 시행령<br>제64조 제3항   |
|    | 요약본<br>상세내용<br>규정      | ×  | ○   | ×   | ×   |
| 4  | 비밀정보<br>요청권 규정         | 반덤핑 협정<br>제6.5조                            | 19 CFR<br>351.304   | 반덤핑 규칙<br>제19조  | 관세법 시행령<br>제64조 제2항   |
|    | 정보공개<br>청구권 규정         | 반덤핑 협정<br>제6.9조                            | ×   | 반덤핑 규칙<br>제20조  | 관세법 시행령<br>제64조 제7항   |
| 5  | 비밀정보 관련<br>사례          | 비밀정보요청이<br>없었음에도<br>비밀정보로<br>취급한 것은<br>위법임 | 반덤핑조사에<br>사용된<br>비밀정보는<br>소송당사자가<br>지정한 APO만이<br>열람할 수 있음 | 비밀정보라<br>하더라도<br>청구인의<br>방어권을<br>침해할 수 없음<br><br>소송대리인<br>(변호사)에게만<br>비밀정보<br>접근권을<br>부여하고<br>비밀발설금지조<br>항을 추가하여<br>비밀정보보호와<br>청구인방어권의<br>균형을 도모할<br>수 있음 | 반덤핑조사에<br>사용된<br>비밀정보는<br>「정보공개법」에서<br>규정한<br>비공개대상으로<br>볼 수 없음 |

- 주: 1) 통상법원  
2) 패널선정 전 양자합의단계 필수  
3) 기술심리와 최종선고는 공개하나, 합의과정은 비공개 진행함  
4) 소송 당사자는 증거 일부를 부분적으로 볼 수 있음

자료: 본문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 시사점

### 가. 정보공개청구권 규정

-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모두 반덤핑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절차의 규정은 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비밀정보 이외의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은 규정되지 않음
  - WTO는 반덤핑 최종판정의 근거가 되는 필수 요소(the essential facts)를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정보의 공개는 당사자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함
    - 증거 공개와 관련하여 도하개발의제(DDA)에서 미국은 ‘충분한 시간’과 ‘필수 요소’의 구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일본은 증거 공개의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며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음<sup>158)</sup>
  - EU는 반덤핑조치가 부과된 근거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와 고려사항의 기초가 되는 세부사항을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또한 잠정조치와 최종조치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근거내용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함
- EU의 경우 반덤핑조치의 피조사자가 반덤핑 조치의 결정적인 근거에 대한 정보제공을 EU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 다른 국가들과 차별을 띠며
  - 비밀정보의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 EU사법재판소는 상대방의 중요 정보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주장(right of defence)과 비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need to protect confidentiality)의 균형을 도모하는 입장임

158)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관련 WTO 분쟁사례 분석」, 더인터네셔널 트레이드 컨설팅, 2007.9, p. 266

-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7항에 반덤핑조사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 반덤핑 소송 진행 시 이해관계인의 반덤핑 조치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하다고 보여짐
  - 행정안전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반덤핑조사에 사용된 비밀 요청규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인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령」 내용을 해석함
- 따라서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 「관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의 방어권과 비밀정보 보호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이 존재함
  - EU 사법재판소는 청구인 방어권 규정을 통해 EU 기관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EU 기관에 대해 이유명시의무, 방어권 준수 및 관련 증거 평가시 주의의무를 다할 것 등의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함<sup>159)</sup>

## 나. 공개용 요약본 상세규정

- 주요국 모두 반덤핑조치에 사용된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축소한 공개용 요약본의 작성을 규정함
-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경우 공개요약본을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미국처럼 상세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미국의 반덤핑 관련 규정에는 공개요약본에 대한 지침이 명시되어 있으며 상세한 반덤핑 매뉴얼을 만들어서 소송당사자들의 편의를 도움

---

159) 김세환(2013.12), p. 252

- 작성 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 ]”의 표시가 필요함
- 기업의 매출액이나, 원자재, 인건비를 표시할 때 정확한 숫자를 쓰기보다는 10% 내의 숫자를 작성하며 10%로 보호되지 않는 수치라면 20%까지 범위 확장을 허용하고 있음
- 반덤핑 매뉴얼은 부적절한 제출의 반송의 예시, 공개용 지수(index)를 계산하는 방법, 공개요약본을 작성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음

#### 다. 영업비밀 보호체계와 대리인 제도

- 우리나라와 EU는 영업비밀보호를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 2원적 비밀정보보호 체계를 가짐
  - WTO 협정은 2원적, 3원적 비밀정보보호 체계를 모두 가짐
- 미국의 경우 APO라는 대리인(제한적 공개) 제도를 두어 3원적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정보를 세분화하여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에 노력하고 있으며 반덤핑 조사를 위해 효율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함
- APO는 조사국 중 미국에만 존재하는 제도임
  - 오직 이해관계인의 대리인(변호사)에게 상대방 기업의 영업상 비밀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전담 관리 부서인 사건관리부에서 정보를 통제하고 있음
  - APO 지정자가 되기 위해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지정목록 이외의 사람들은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없음
  - 사건관리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비밀정보 공개 시 벌금과 징역형을 받는 처벌규정이 존재함

- 비밀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APO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sup>160)</sup>
  - 소송당사자의 각 대리인들에게 모든 영업비밀을 공개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점임
  - 각 소송당사자들의 대리인이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오류를 지적할 수 있으므로 소송의 횡수가 줄어들 수 있음
  - 어떤 정보를 통해 판정의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의심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상대방의 정보를 통해 소송당사자를 방어할 수 있음
- APO 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음<sup>161)</sup>
  - 전자정보로 변환된 영업비밀정보의 경우 해킹을 통해 잠재적으로 유출 가능성이 있음
  - 대리인을 통해 비밀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APO 지정자(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며, 지정하지 않을 시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함
  - 소송당사자는 변호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으며 소송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EU는 청문관(Hearing Officer)과 APO 역할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APO 제도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APO 제도 도입의 논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sup>162)</sup>

160) bkp DEVELOPMENT RESEARCH & CONSULTING, Evaluation of the EU's trade defence instruments(volume 1), 2012.2

161) bkp DEVELOPMENT RESEARCH & CONSULTING, Evaluation of the EU's trade defence instruments(volume 1), 2012.2

162) Evaluation of the European Union's Trade Defence Instruments - Final Evaluation Study, bkp Development Research & Consulting, 27 Feb. 2012

- EU 일각에서도 집행위원회의 반덤핑조사와 관련된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할 수단으로 APO 제도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됨<sup>163)</sup>
  - 비밀정보 배포 염려에 대해서는 APO 지정 대상자 범위 확대와 EU 집행위원회의 직접적인 비밀정보 조사권의 부여를 고려하자고 제시함
    - 미국의 APO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 변호사가 아닌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컨설턴트 또는 무역 전문가를 APO로 지정
    -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이해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이용 가능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
  - 무역전문가나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를 APO로 선임할 경우, 이러한 비변호사인 APO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제도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집행위원회가 APO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EU 입법 절차를 거친 후 EU 회원국과 각국의 법 집행 기관에서 시행해야 할 것
    - 유럽법률사회위원회(the Council of Bars and Law Societies of Europe, CCBE) 또는 각 회원국 내의 변호사 행동 규정 내에 APO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APO 도입으로 인해 증가할 비용을 걱정할 수 있는데 반덤핑 조사에 포함된 중소기업을 그룹화하여 집단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무역협회의 전문가를 활용해 추가 고용부담 없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반덤핑조사에 해당하는 각 기업은 증거 취득을 위해 개별적으로 조사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EU 산업 내 중소기업들이 함께 그룹을 구성하고 집단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이 무역협회 회원인 경우, 해당 협회 내 전문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협회 연회비로 서비스요금을 충당할 수 있음

163) The Foreign Trade Association(FTA), "ACHIEVING TRANSPARENCY IN THE EU'S ANTI-DUMPING REGIME," 2015.10, p. 10

- 미국의 APO 제도는 소송대리인에 한정한 정보공개 제도이기에 하나의 대안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
  - 3원적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소송대리인(변호사)을 활용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한 EU와 같이 우리나라도 변호사에게 비밀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외부에 발설할 수 없게 보증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소송 대리인(변호사)이 자료의 사본을 취할 필요 없이 무역위원회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무역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확히 검증할 수 있고, 자신의 계산과 비교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소송대리인의 비밀정보 접근을 통해 이해당사자는 무역위원회가 집계할 수 없는 오류를 식별할 수 있어 무역위원회의 절차의 투명성과 청구인 방어권 존중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음

## V. 결론

-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됨에 따라 반덤핑 조치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덤핑 소송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한편, 소송에서 반덤핑 조치에 활용된 수입물품 원가나 생산비용 등 기업의 비밀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반덤핑소송에서의 비밀정보는 법적 체계를 통해 어떻게 비밀로서 취급되는지를 WTO 협정, 우리나라, 주요국으로 미국과 EU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음
  - 「WTO 반덤핑 협정」은 WTO 회원국의 국내 반덤핑법령의 모태가 되므로 반덤핑소송의 국제적인 기본법으로 보고 이를 살펴봄
  - 미국은 조사대상국 중 유일하게 반덤핑 소송 시 비밀정보를 지정된 대리인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APO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EU는 28개국 회원국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EU 기관에서 대표로 처리한다는 특이점이 있어 조사대상국으로 선정함
  
- 조사결과 반덤핑소송에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공개용 요약서의 제공과 지정 대리인만이 비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APO 제도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소송당사자의 합리적인 반덤핑조치 검증을 위해 필수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권 제도가 있음
  - 공개용 요약서는 반덤핑 소송의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비밀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상세히 작성한 서류를 말함

- 비밀정보 보호체계는 공개, 제한적 공개, 비공개 3가지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한적 공개의 예로 미국의 APO 제도가 있음
  - 정보공개청구권은 반덤핑 조치를 행한 공공기관에 반덤핑조치에 근거가 되는 본질적인 요소와 조치를 위한 고려사항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이해당사자의 권리임
- 이 세 가지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우선, 현재 세부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관세법」상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공개용 요약본의 경우, 미국과 같이 작성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면 소송 당사자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음으로, 대리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밀정보공개를 가능케 하는 APO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WTO, 우리나라 및 EU의 경우 소송 증거는 소송상대방 모두 열람할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 오직 APO만이 상대방 기업의 영업상 비밀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함
    - EU는 반덤핑조치에 사용된 정보를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APO 제도를 새롭게 받아들여자는 의견이 조사되었음
  -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활용방법을 「관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의 방어권과 비밀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EU 사법재판소(ECJ)는 반덤핑조치를 취한 집행기관(EU 기관)이 제출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해야만 하는 정당성(good cause)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반덤핑 조치의 근거가 되는 정상가격 결정방법, 덤핑마진계산 및 피해 금액 계산 등의 필수정보를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을 명령한 사례가 있음
- 각 국가들은 문화와 환경에 따른 법체계의 차이로 단순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반덤핑 소송과정 중의 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에 국가별 제도 비교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참고문헌

### 〈국문 서적 및 보고서〉

- 강수경, 「EU의 행정소송」,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5권, 공법학회, 2007.2.
- 금병기, 「독일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중앙법학』 제13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11.12.
- 김기영, 「통상의 국내적 규제와 사법심사」, 『기업법연구』 19권 4호, 2005, p. 80.
- 김세환, 「EU 반덤핑법에 관한 사례 연구」, 『공법연구』 제42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13, 12.
- 김영조·이재교·김재광,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연구』, 국세청, 2005. 7.
- 김재식, 「관세행정소송의 변화추이와 주요쟁점」, 『무역연구』 제2권 제3호, 국제무역학회, 2013.6.
- 김중권, 「유럽행정법상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시스템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1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2.10.
- 김중권, 「독일 행정소송법에 대한 EU행정법의 영향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5.
- 김해원, 「독일에서 법원의 판단, 심리 그리고 소송기록 공개의 헌법적 기초와 실태」, 『법학논총』 제28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7.
- 김현준·정하중·박규수, 『행정심판 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법학회, 2013.11.
- 노현숙·구천을, 「중국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호 제1권, 서강대학교, 2016.4.
-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관련 WTO 분쟁사례 분석」, 더인터네셔널 트레이드 컨설팅, 2007.9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7.
- 박주성, 「미국 행정부의 헌법재판 및 행정소송 대응방법」, 『국외훈련심사 연구논문집』 26집, 2011.
- 박종수, 『조세소송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6.
- 박지우·이재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 반홍식,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비밀보호(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17권 제1호, 2013.5.
- 변지영,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10.
- 소순무, 『조세소송』, 2014.2.
- 외교부,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2017.12.
- 이영무, 「중국에서의 반덤핑관련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4호 제2권, 인하대학교, 2011.7.
- 이상윤, 「영업상비밀보호 및 정보공개운영규정 연구」, 무역위원회, 2002.
- 이세정·박영도·강현철·이상윤·김승열·한귀현, 『관세법 분법 연구』, 법제처, 2013.10.
- 이학노, 「미국 ITC, ITA의 조직 및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 이환규, 「EU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1.
- 장동식, 「WTO 분쟁해결제도(DSU) 개혁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79호, 2008.2.
- 정기창, 「WTO 분쟁 패소국의 불이행요인과 이행촉진방안 분석」, 『통상법률』 제112권,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3.8.
- 정이근, 「중국 개정 행정소송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전남대학교, 2016.12.
- 정재호·이민선·양지영,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 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2.
- 정재호·노영예·박지우·홍현표, 『주요 교역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

- 정하중,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신문 오피니언』, 2008. 10.9..
- 조일림·김희철,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에 대한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4호, 2017, 12.
- 주디스 차코, 요한 휴먼, 조르주 미란다, 「WTO 반덤핑 가이드북」, 2013.11.
- 주정선, 「민사소송절차에서 공개재판의 원칙과 비밀보호」, 『서강법학』 제2호, 2000.3.
- 채형복, 『EU 반덤핑법』, 높이깊이, 2009.8.
- 특허청, 「미국분쟁사례연구과정」, 2008.11.
- 특허청, 『미국 특허심판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 연구』, 2007.9.
- 한상국·박훈,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12.
- 황진영, 『미국 조세법원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0.12.

#### 〈영문 보고서〉

- bkp DEVELOPMENT RESEARCH & CONSULTING, Evaluation of the EU's trade defence instruments(volume 1), 2012.2.
- The Foreign Trade Association(FTA), “ACHIEVING TRANSPARENCY IN THE EU'S ANTI-DUMPING REGIME,” 2015.10.
- WTO, 반덤핑협정.  
\_\_\_\_\_, 분쟁해결협정.
- ILO,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rights of defence in EU trade defence proceedings”, <http://www.internationallawoffice.com>.

#### 〈국문 웹사이트〉

- 뉴아이피비즈, <http://www.newip.biz/interest/?type=view&gkind=7&interestkind=&index=739&page=10>.
-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씨엘HS <http://www.clhs.co.kr/>.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7,13조, <https://www.tradesecret.or.kr/institution/legalInfo.do>.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소송 절차 개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29&ccfNo=3&cciNo=1&cnpClsNo=1>, 검색일자: 2018.2.14.

코트라, <https://www.kotra.or.kr>, 국가개요: 독일-수입규제제도.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 〈영문 웹사이트〉

미국 CFR 법령,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351.105>.

미국 CFR 법령,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351.304>.

미국 관세법,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1905>.

반덤핑매뉴얼, <http://ia.ita.doc.gov/admanual>, 검색일자: 2018.2.13.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HANDBOOK, <https://enforcement.trade.gov/apo/apo-handbook-20150310.pdf>.

CBP, [www.cbp.gov](http://www.cbp.gov).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156\\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156_e.htm), 검색일자: 2018.2.10.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6.aspx?DataSource=Cat&query=@Symbol=WT/DS156/R&Language=English&Context=ScriptedSearches&languageUIChanged=true](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6.aspx?DataSource=Cat&query=@Symbol=WT/DS156/R&Language=English&Context=ScriptedSearches&languageUIChanged=true), 검색일자: 2018.2.11.

<http://www.uskoreatrade.org/cit-litigation->

<http://ntb.kita.net/import/countryProcedure.screen?menuid=ntb040102>.

Commencement of a civil action 28 U.S.C. 2632,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2631>.

Enforcement and Compliance, <http://web.ita.doc.gov/ia/webapotrack.nsf/homepage?openform>.

<http://ia.ita.doc.gov/admanual/2015/Chapter%2003%20Access%20to%20Information.pdf>.

EUR-Lex (EU법령검색)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12012E%2FTXT>, 검색일자: 2018.2.14.

westlaw, <https://next.westlaw.com>.

ILO, <http://www.internationallawoffice.com>.

## 부록

- 부록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반덤핑소송과 관련된 비밀정보의 취급규정과 공개재판 원칙의 내용을 담았음

### 가. 일본

- 일본의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비밀정보 규정은 「덤핑관세에 관한 정령」에 명시됨<sup>164)</sup>
  - 「WTO협정」에 따라 비밀정보 취급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였음
- 「덤핑관세에 관한 정령」 제11조에 증거 등의 열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이해 관계자에 의해 비밀 정보로 제공된 서면, 증거, 비밀 정보가 포함된 증언을 녹취한 서면을 제외하고 열람할 수 있음
- 「덤핑관세에 관한 정령」 제17조에 의해 신청인은 덤핑 관련 증거가 비밀정보로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sup>165)</sup>
  - 재무 장관은 제출된 자료 중에 비밀정보로 인정되는 증거(이하 “비밀 증거 등”)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한 자에게 비밀 정보에 대해 요약을 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함

---

164) 덤핑관세에 관한 정령,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06CO0000000416&openerCode=1#38](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06CO0000000416&openerCode=1#38), 검색일자: 2018.3.15

165) 덤핑관세에 관한 정령,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06CO0000000416&openerCode=1#38](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06CO0000000416&openerCode=1#38), 검색일자: 2018.3.15

- 서면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비밀 증거 등에 대한 요약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재무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비밀 증거 등에 관해 서면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비밀로 취급이 요구된 증거에 대해 조사하지 않음
  -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밀 증거 등에 대해 조사하지 않음
  - 재무 장관이 증거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거 등을 제출한 자에게 신속하게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함
- 민사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비밀유지명령(秘密保持命令)제도가 존재함<sup>166)</sup>
- 비밀유지명령은 공개재판원칙과 소송 중 비밀정보가 공개되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임
    - 소송 과정 중에 비밀정보를 상대방이 알게 되어도 비밀성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비밀유지명령 제도는 민사소송 서류에 비밀정보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처벌함
    -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제7조 서류의 제출에서는 소송 당사자의 손해를 판명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서류소지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sup>167)</sup>
    - 정당한 이유를 검증하기 위해 법원은 서류 소지자에게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서류는 누구도 개시를 요구할 수 없음

166) 박인환, 「민사소송절차와 영업비밀보호-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제16권 제1호, 2012. 4, p. 173

167) 「부정경쟁방지법」 7조

- 법원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해당 서류를 개시할 수 있음
  - 제10조 비밀유지명령
  - 제11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12조 관련 소송기록 열람등의 청구통지
  - 제13조 심문의 비공개화를 통해 비밀정보에 대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 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음<sup>168)</sup>
    - 재판 중 영업비밀을 진술로 인해 당사자의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며, 그 진술이 빠짐으로써 다른 증거만으로는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재판관이 전원 일치로 인정하는 때에는 비공개로 전환이 가능함
    - 법원은 비공개 전환 결정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일본은 헌법 재판공개에 대한 조항 제82조 제1항에 의해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법정에서 행한다.”고 공개재판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심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함<sup>169)</sup>
- 공개재판원칙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심리 및 판결을 공개해야 하지만 영업비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비공개 심리 시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제3자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지적됨<sup>170)</sup>
-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정법, 저작권법에 비밀유지명령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함<sup>171)</sup>
- 일본 특허법 제105조 4항에는 비밀심리절차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규정하여 비밀정보를 보호하려고 함

168)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

169) 특허청,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 심판 및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 2012. 9.

170) 박인환(2012. 4), p. 167

171) 박인환(2012. 4), p. 51

-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 요청을 하고 비밀 취급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 비밀정보는 법원에서 지정한 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음

## 나. 중국

- 중국의 반덤핑 소송 중 반덤핑 조치에 대한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반덤핑 행정행위를 행한 피고(국무원)가 입증책임을 짐<sup>172)</sup>
  - 피고는 반덤핑 행정행위의 증거와 이와 관련한 규범성 문건을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반덤핑 조치의 적법성을 심사함
  - 그러나 반덤핑 조치에 대한 공개적인 감독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덤핑 조치 이후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를 반덤핑 행정기관(국무원)이 추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됨
-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증거의 관련성, 합법성, 진실성을 심사한 뒤 이를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sup>173)</sup>
  -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규정은 반덤핑 조사단계에서의 증거 입증의무를 사실상 원고에게 부담지우고 있음
    - 피고는 반덤핑 조사절차 중, 법정절차에 따라 원고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증거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됨<sup>174)</sup>
    - 만약 원고 등이 증거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소송절차 중 제공한

172) 이영무, 「중국에서의 반덤핑관련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4호 제2권, 인하대학교, 2011.7, p. 257

173) 이영무(2011.7), p. 258

174) 「반덤핑규정」 제8조와 제9조

정보를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국무원 주관부문이 입수한 증거에 따라 도출된 결론을 증거로 삼을 수 있음

- 원고와 피고의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증거에 대한 상호대질을 행하여야 함<sup>175)</sup>
  - 인민법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며, 채택하지 않은 증거는 반드시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함
  
- 현재 중국법상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반부정당경쟁법, 계약법, 형법, 기타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통해 보호되고 있음<sup>176)</sup>
  -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서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함
  - 민법통칙 제134조, 반부정당경쟁법 제25조와 침해금지에 관한 일부규정 제7조, 그리고 형법 제219조 등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행정적 구제 및 형사책임을 규정함
  - 기타 최고인민법원은 일부 문제에 관한 해석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침해금지에 관한 일부규정으로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당사자의 증명책임, 침해행위 성립여부의 판단기준, 그리고 침해책임의 부담방식 등을 규정함
  
- 중국의 영업비밀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비밀유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함<sup>177)</sup>
  - 민사소송에서 영업비밀이란 생산 공예, 무역연락처, 거래경로, 처방 등,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은 공업과 상업비밀을 의미함<sup>178)</sup>

175) 정이근, 「중국 개정 행정소송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전남대학교, 2016.12. p. 449

176) 노현숙·구천을, 「중국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기업연구』 제6호 제1권, 서강대학교, 2016.4, p. 85

177) 노현숙·구천을(2016.4), p. 84

- 중국의 민사소송 원칙의 하나인 ‘권리 주장자가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으로 인해 영업비밀 권리자는 민사침해소송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sup>179)</sup>
  - 영업비밀 권리자는 증거 제시 시 영업비밀이 공개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민사침해소송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음
    - 영업비밀 권리자를 위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심리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중국의 형사소송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해당 영업비밀을 보호할 효과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송 진행 중 또다시 영업비밀이 공개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음<sup>180)</sup>
  - 영업비밀 권리자는 소송과정을 통해 영업비밀의 노출이 잦아져 추가 피해를 우려해 소송자체를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178) 「1992년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 제154조에 따름

179) 노현숙·구천을(2016.4), p. 93

180) 노현숙·구천을(2016.4), p. 97



관세연구 17-06  
주요국의 반덤핑소송절차와  
비밀정보취급규정에 대한 연구

---

발 행 2017년 12월 29일

저 자 신상화 · 김다량 · 양지영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ISBN 978-89-8191-926-9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